

동물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for Animal Protect Legislations

연구자 : 김 수 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004. 11.

국문 요약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종교에 따라 또 철학적 소신에 따라 변화해오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맞춰 세계 각국은 동물보호의 최저기준을 정한 입법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동물을 감각이 있는 생명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1991년에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였지만, 사실 이 법의 실효성은 극히 미미하다. 특히 농장동물이나 실험동물에 대한 법의 정비는 거의 전무하다. 이는 이해집단과의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긴 하지만, 동물을 인도적으로 다루는 것이 곧 인간의 건강과도 직결되고, 실험결과에 대한 인증을 위한 국제적인 요구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관련법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동물보호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역사적, 철학적으로 고찰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동물복지론과 동물권리론에 대하여 살펴보고, 실정법상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비교법적 고찰로 미국, 독일과 스위스의 동물관련법제를 동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분류하여 고찰한다. 즉 동물보호법의 일반내용, 농장동물관련법제, 실험동물관련법제, 반려동물관련법제로 나누어본다. 그 후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의 내용과 현재 개선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을 비교해보겠다. 개선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은 농림부의 1999년 동물보호법개정안, 2002년 동물보호법개정안 및 2004년도의 동물보호법개정취지와 동물보호단체들이 구성한 2002년과 2004년 동물보호법추진위원회의 안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동물관련법제의 비교와 우리나라의 도입 가능한 정도, 2005년 동물보호법에서 농장동물, 실험동물,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정비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 키워드 : 동물보호, 동물복지, 동물권, 농장동물, 실험동물, 반려동물, 동물보호법, 동물복지법

Abstract

Over the last few decades countries from all regions in the world have begun to promulgate legislation for minimum standards of animal protection. One of the largest driving forces behind this legislation is the growing understanding of animals as sentient beings. In 1991, Korea enacted the Korea Protection of Animals Law, but in reality is a paper tiger.

This Paper will give the basic information relating to animal protect(welfare) legislations in Korea. First, an overview of the historical sources of the animal protection. Through historical highlights of the movement, and an introduction to the strategies used by key players. This report will attempt to lay out some of the central considerations and points of debate that shape one of the most controvesal human/animal relations dilemmas. Second, this Paper will address the animal welfare legislation in other countries, in the US, Germany, Swiss, in focus on general animal protection, farm animal, animal for research and companion animal. In conclusion, this Paper aims to propose the improvements in the current legislation comparing with other jurisdictions.

※ Key Word : animal welfare act, animal right, animal in Farm, animal in Laboratory, pet

목 차

국문요약	3
Abstact	5
제 1 장 서 론	11
제 2 장 동물보호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5
제 1 절 동물보호의 연혁과 배경	15
1. 역사적 고찰	15
(1) 종교적 논의	15
(2) 철학적 논의	15
2. 최근의 동물보호논의	17
(1) 동물복지주의	19
(2) 동물권	21
(3) 신동물복지주의	24
제 2 절 실정법상의 동물보호	25
제 3 장 외국의 동물관련법제	29
제 1 절 외국의 동물보호법과 관련법령	29
1. 미 국	29
(1) 동물복지법의 연혁	29
(2) 동물복지법의 체제와 주요내용	30
(3) 동물복지관련 연방법	35
(4) 각 주의 반학대법	35
2. 독 일	37
(1) 동물보호법	37
(2) 기타 법령	42
3. 스위스	42

(1) 동물보호법의 연혁	43
(2) 주요내용	44
제 2 절 농장동물관련법제	45
1. 미 국	46
(1) 농장동물에 대한 처우	46
(2) 동물의 운송	46
(3) 인도적 도살방법에 관한 법	48
2. 독 일	50
(1) 농장동물에 대한 처우	50
(2) 동물의 운송	52
(3) 인도적 도살	54
3. 스위스	56
(1) 농장동물의 처우와 운송	56
(2) 인도적 도살	56
제 3 절 실험동물관련법제	59
1. 미 국	59
(1) 동물복지법	60
(2) 보건연구연장법	63
2. 독 일	63
3. 스위스	65
제 4 절 반려동물관련법제	66
1. 미 국	66
2. 독 일	67
3. 스위스	68
제 4 장 우리 나라의 동물관련법제	69
제 1 절 동물보호법의 개정논의	69
1. 동물보호법의 목적, 대상 및 보호의무	69

(1) 동물보호법의 목적	69
(2) 동물보호법의 대상	70
(3) 소유자등의 의무와 일반인의 동물학대금지	72
2. 국가의 역할	76
(1) 국가의 계획수립, 지원 및 처벌방안	76
(2) 동물보호단체의 개정안	76
(3) 동물보호감시관제도의 도입	77
제 2 절 농장동물관련법제	78
1. 농장동물의 사육	78
(1) 동물보호법상의 해당조문	78
(2) 축산법의 해당조문	79
(3) 동물보호단체의 개선안	82
2. 농장동물의 운송	82
(1) 우리나라의 현황	82
(2) 동물보호단체의 개선안	83
3. 인도적인 도살	84
(1) 동물보호법상의 해당조문	84
(2) 축산물가공처리법	85
(3) 동물보호단체의 개선안	86
제 3 절 실험동물관련법제	88
1. 동물보호법상의 해당조문	88
2. 2002년의 실험동물법안의 내용	89
3. 동물보호단체의 개선안	90
(1) 연구자면허 및 정보공개	90
(2) 동물실험의 원칙	91
(3)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설치	92
(4) 금지되는 실험	92
(5)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	93

제 4 절 반려동물관련법제	93
1. 반려동물의 소유자의 의무	94
(1) 농림부 개정안	94
(2) 동물단체개정안	95
2. 반려동물의 판매업	96
(1) 농림부 개정안	96
(2) 동물보호단체의 개선안	97
3. 유기동물의 처리	98
(1) 동물보호법의 해당조문	99
(2) 동물보호단체의 개선안	100
제 5 절 요약 및 검토	101
1. 동물보호법의 정의규정	102
2. 보호의무의 이원화	102
3. 국가의 역할	103
4. 농장동물	103
5. 실험동물	104
6. 반려동물	104
제 5 장 결 론	105
참 고 문 헌	111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동물관련법제의 연구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힌두교와 불교는 윤회라는 과정을 통해 인간과 동물의 동질성을 암시한 반면, 기독교는 인간의 다스림을 받는 동물로 상하관계를 규정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 동물이 희생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견해, 인간의 필요에 의해 동물을 다루는데 있어서 인도적이어야 한다는 견해로부터 더 나아가 동물에게도 인간과 같은 생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발전해오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법에도 투영된다. 과거 동물에게 불필요한 학대를 한 자를 처벌한 것은 동물을 학대함으로써 인간이 느끼게 되는 평안하지 못함을 야기했기 때문이었고, 소유주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었다. 이는 형법에서 동물학대를 처벌하던 것이 동물보호법으로 발전되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현대로 넘어오면서 동물사용에 대한 인식 변화는 동물에 대한 도덕적인 고려도 포함한다. 국가에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다르다. 미국의 경우는 동물이 도덕적 고려의 가치가 없는 재산이라는 사고에 기초하는 경향이 강해 보이나, 유럽에서는 동물 자체의 이익을 위해서 동물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경향이 강해, 헌법에 같은 생명체로서의 동물보호의 이념이 명시되기도 하고, 동물의 민법상 지위를 물건이 아니라 인간과 물건 사이의 특별한 제3의 위치를 부여하고 있다.

동물관련법제는 우선 동물을 보호하는, 즉 입법, 기타 명령과 모든 종류의 보호조치를 통해 동물의 고통이나 불필요한 성가심을 줄여주려는 모든 노력을 언급한 동물보호법이 그 기본법이 된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이 모든 동물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반려동물이 다루어지는 방법과 농장동물과 실험동물이 다루어지는 방법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농장동물, 실험동물, 반려동물, 서커스나 동물원의 동물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개별동물들과 관련된 문제는 동물보호의 측면만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다면적인 인간의 이익과 동물의 이익의 형량을 고려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가축당 필요면적, 사육방법 및 동물에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적절한 먹이, 물, 햇빛, 공기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이는 농장동물보호를 위한 측면도 고려한 것이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먹거리로서의 위생문제가 고려되고, 축산업자에게는 비용상승의 요인 및 내지 등록업체가 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별법령도 동물보호법과 관련하여 동물관련법제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동물관련법제는 1991년에 제정된 동물보호법을 필두로, 야생동·식물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수의사법 등을 들 수 있다. 1991년 12개의 조문으로 선언적이고 윤리적인 권고사항을 담은 동물보호법은 1998년, 2002년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단체와 각 이익집단들의 이해가 분분하여 통과되지 못하였다. 2004년 현재 농림부는 2005년 동물보호법의 개정을 위하여 각 단체와 의견조정을 거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중이다. 동물관련법제의 각론이라 할 수 있는 농장동물, 실험동물, 반려동물과 관련된 내용들이 정비되기를 바라는 동물보호단체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는 반려동물 관련법제를 정비하려는 노력만이 보일 뿐이다. 그러나 실험동물의 사용기준 및 농장동물의 사육 및 도살에 관한 내용도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적 기준을 참조하여 법제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 동물보호의 개념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동물보호의 이념적 토대를 적시하여, 앞으로 동물관련법제의 방향을 예측하고, 외국의 법제를 살펴봄으로써 그 역사적 경과와 동물관련법제의 구성 및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개정에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도록 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시의 적절한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일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범위

이미 언급한 동물관련법제의 모든 것을 다루는 데는 제약이 따르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동물관련법제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다. 동물관련법제의 경우는 동물보호의 목적, 주체, 동물학대금지조항의 열거유무, 처벌조항 등을 다룬 동물보호법총론과 각론이라 할 수 있는 농장동물, 실험동물 및 반려동물에 대한 내용을 다룬 동물보호법조문과 관련법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동물보호를 위한 조직이나 실효성장화부분에 치중하기보다는 현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서 다루지 않거나 극히 미흡하게 다루고 있지만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표준안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농장동물, 실험동물 및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제에 중점을 두겠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연구목적과 연구의 범위를 서술한다.

제2장에서는 동물관련법제의 기저가 되는 동물보호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한다.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상하종속관계인지, 아니면 동물에게도 인간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각각의 논의와 이러한 내용들이 현실의 법에는 어떻게 녹아들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제3장에서는 비교법적 연구로서 그 대상국가를 미국과 유럽연합규정의 적용을 받는 독일과 스위스로 한정하겠다. 미국의 경우는 반려동물 및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동물복지법 및 실험동물관련법제와 동물복지의 일반이라 할 수 있는 동물학대의 금지를 다룬 각 주의 학대금지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독일의 경우는 거의 모든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개별동물의 취급에 관한 유럽지침을 국내법화한 독일개별법령들을 소개한다. 스위스의 경우는 연방동물복지법과 동물복지법시행령을 살펴본다.

제4장은 우리나라의 동물관련법제와 개선방안을 살펴보겠다. 우선 현행 동물보호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현재 운용되고 있는 농장동물, 실험동

제1장 서론

물, 반려동물과 관련된 실상과 규제현황을 살펴본 후,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개선안을 내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의 동물보호법개정을 앞두고 발표된 농림부의견과 동물보호법추진위원회의 법안도 같이 검토될 것이다.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서 우리 나라의 현실에 필요한 동물보호법의 개정내용, 특히 농장동물, 실험동물과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보호법상의 법조문안과 관련법의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동물보호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종교에 따라, 시대적인 철학적 논의에 바탕을 두고 변화해오고 있다. 과거 인간의 도구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던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동물보호의 목적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즉 인간중심적으로 동물을 인도적으로 보호하는 문제인가, 아니면 동물에게도 고유의 권리를 인정하여 인간으로부터의 침해를 배척할 수 있는 동물권을 인정하자는 논의까지도 존재한다.

제 1 절 동물보호의 연혁과 배경

1. 역사적 고찰

(1) 종교적 논의

동물에 대한 인식은 종교에 따라 상이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힌두교의 믿음에 의하면 동물들은 인간과 같이 불멸의 영혼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 많은 동물들을 신과 같이 숭배한다. 부활의 끊임없는 과정, 윤회라 불리는 과정에서 영혼은 동물이나 혹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불교의 제1계명이 불살생(不殺生)인 점도 그와 궤를 같이 한다. 반면에, 유럽 기독교사회는 동물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을 오랫동안 믿어왔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의하면 인간은 신을 닮아 창조되었으며, 인간이 동물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우주 전체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진 우월한 존재로 보고 있다.¹⁾

(2) 철학적 논의

1) 인간의 동물에 대한 우월성을 강조한 이론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384~322 B.C.)는 ‘자연의 사다리(Scala Naturae, Ladder of Nature)’라는 개념으로 자연 세계를

1) Marna Owen, Animal Rights - yes or no -, pp. 13~17.

파악하여, 인간이 사다리의 맨 꼭대기에 있고 동물과 식물은 그 지성의 크기에 따라 그 아래 단계를 각각 차지하는 일종의 계층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았다. 즉 자연은 분명하고 특정한 목적에 따라 생물체들을 설계하며, 낮은 등급에 있는 생물체의 목적은 그보다 높은 등급에 있는 생물체의 먹이가 되거나 노동으로 봉사하는 데 있으므로, 사고의 능력을 가진 인간은 올바르게 식물이나 동물을 지배하거나 통치할 수 있다고 여겼다.²⁾

합리적 이성의 시대라 불리운 계몽시대(1600~1700년대)의 유럽 철학자들은 이성의 사용을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방법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인간이 이성 - 합리적인 의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 위한 능력 - 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다른 창조물들보다 유리한 이점을 가진다고 생각했다. 특히 17세기 프랑스 철학자이자, 수학자, 과학자였던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는 『방법서설』에서 동물과 사람의 몸을 단순한 기계적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시계와 같은 장치에 비유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위에 이성적인 불멸의 영혼과 진정한 언어능력을 갖춘 반면, 동물은 본질적으로 생각과 영혼이 없는 자동 기계와 다를 바가 없으며 여기에 동물과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³⁾

1780년 독일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동물들에 관한 한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의무가 없다고 했다. 그는 모든 인간존재의 생명은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며, 오직 인간만이 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믿었다. 동물은 자의식도 없고, 단지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만 존재할 뿐이며 그 목적이 곧 인간이라고 주장했다.⁴⁾ 이렇듯 근대 초기 철학자들이 인간과 동물 사이에 확고한 경계선을 그으려 노력한 주된 목적은 사냥, 사육, 육식, 생체해부, 해충과 맹수 박멸 등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었다. 이는 가축을 객체와 상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었으며 자연에 대해 공격적이고

2) 제임스 서펠(윤영애 옮김), 『동물, 인간의 동반자』, 들녘 2003, 209~211면. 고전학자 리처드 소랍지는 자신의 저서인 『동물의 마음과 인간의 도덕』에서 동물(사람이 아닌)에 대한 중세의 부정적인 시각이 일차적으로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이라고 언급했다.

3) 마크 콜렌즈(윤영삼 옮김), 『동물의 역습』, 달팽이 2004, 20~23면; 제임스 서펠(윤영애 옮김), 『동물, 인간의 동반자』, 들녘 2003, 214~215면.

4) Marna Owen, supra, p. 15.

착취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해 주었다.⁵⁾

2) 동물의 지위를 격상시킨 이론

이와는 반대로 칸트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영국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은 1790년 『도덕과 입법원리 입문』에서 동물과 인간을 구별짓는 것은 이성, 영혼, 언어능력의 존재유무가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에 귀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⁶⁾ 그 후 영국의 자연과학자인, 찰스 다윈은 19세기 인간이 자연의 시계에서 인류를 바라보던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었다. 한 종류의 동물이 다른 종의 동물로부터 기원하고, 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⁷⁾, 1871년 『The Descent of Man』에서 인간도 다른 영장류, 가령 유인원이나 원숭이들과 같은 종으로부터 진화되었다고 하여 인간도 진화의 굴레에 포함시켰다.⁸⁾ 이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다.⁹⁾ 또한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인간만이 도구를 이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인간을 이제 더 이상 ‘유일한 도구제작자’라고 하지 않고 ‘최고의 도구제작자’라고 한다. 이로써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이제 더 이상 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양적인 차이에 머물게 되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2. 최근의 동물보호논의

에버바흐는 동물보호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첫째는 고유의 종교적 동물보호인데, 이는 누군가가 신의 세계질서

5) 키스 토머스는 인간이 다른 생명체에게 지배력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관념이 농업과 경제의 발전을 크게 촉진하는 등 유용한 문화적 수단이었다고 보았다. 제임스 서펠(윤영애 옮김), 『동물, 인간의 동반자』, 들녘 2003, 234면.

6) 제임스 서펠(윤영애 옮김), 앞 책, 들녘 2003, 209~211면.

7) 1859년 다윈은 한 종류의 동물이 다른 종의 동물로부터 기원하고, 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다윈의 진화론에는 인간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8) 그는 인간과 동물의 정신적 능력을 비교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우리는 인간의 것임을 자랑하던 감각, 직관, 다양한 감정, 능력, 가령 사랑, 기억, 태도, 호기심, 상상, 이성 등이 하등 동물들의 초기단계 혹은 때로는 더욱 잘 발달된 조건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9) Marna Owen, supra, p. 16.

를 믿으면 당연히 모든 생명체를 운명공동체로 보고 동물을 신의 창조물인 형제로서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인도적 의미에서의 동물보호는 동물과 인간의 종별 밀접함을 인식하고 강한 동정심과 정의에 합당하게 동물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을 의미하고, 셋째는 일반적인 자연보호의 부분으로서의 동물보호는 멸종위기에 있는 종의 보호 등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이유에서의 동물보호는 이용이 가능한 동물, 특히 가정동물에 신경을 쓰는데 여기에는 전염병퇴치 및 질병예방 등의 수의학적인 관점이 고려된다.¹⁰⁾ 이렇듯이 동물을 보호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왜 동물을 보호해야하는지, 보호의 정도는 어디까지인지가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보는 입장에 따라 매우 다르게 주장되고 있다.

인간의 동물에 대한 입장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인간들은 동물들에 비해 우월하다. 동물들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소유대상이며, 우리는 그 동물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부류이다. 그들에게는 권리란 인간에게만 제한되는 것이며 AIDS를 가진 사람의 고통이 언제나 실험용 쥐의 고통보다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둘째, “동물들은 오직 인간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 가능한 한, 이때 이용되는 동물들은 잔인하지 않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류이며 동물복지주의자로 분류될 수 있다. 셋째, “동물들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동물들은 그들의 삶을 자연스럽게 잔인함 없이 살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인간들은 어떠한 이유로도 동물들을 지배하거나 실험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동물권리론자들이다.¹¹⁾ 이하에서는 동물을 향한 인간의 잔인성과 동물에게 가해지는 불필요한 고통을 비판하면서도 동물들이 지니는 도덕적 지위를 놓고 침예하게 대립하는 동물복지주의와 동물권리론의 주장을 소개하겠다. 이는 인간중심의 간접적인 동물보호와 직접적이고 도덕적인 동물보호의 근거인 동물중심의 동물보호로 나뉘게 된다.

10) Holger Herbrüggen, Österreichisches Tierschutzrecht im Lichte der europäischen Integration, Braumüller, 2001, S. 8~9.

11) Marna Owen, supra, p. 33~35.

(1) 동물복지주의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인간중심적으로 이해하는 동물복지론자들은 인간은 동물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사람들로써 그들의 보호 아래 동물의 복지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즉 동물복지란 동물에게 적절한 주거 환경의 제공, 관리, 영양 제공, 질병 예방 및 치료, 책임감 있는 보살핌, 인도적인 취급, (필요한 경우의)인도적인 안락사 등 동물의 복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인간의 의무를 뜻한다.¹²⁾ 이 입장에 따르면, 사회에 이득이 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최대한 친절하게 다루는 한, 그 동물들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동물복지론자들은 동물들에게 전통적으로 인간에게 보장된 것과 같은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동물들에게 인간의 이익이 위태로울 만큼 과도하다 할 정도의 이익이 부여된다면 동물들은 희생되거나 교환처분이 가능하다고 믿는다.¹³⁾

전통적인 도덕관념에서도 동물에 대해 어떠한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모든 인간에게 인간이 아닌 동물을 “인도적으로” 다룰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무엇이 “인도적” 처우이고 “불필요한” 고통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동물의 이익을 “형량”하도록 하고 있다.¹⁴⁾ 따라서 권리의 제한이나 박탈은 “필요성의 주장(claim of necessity)”에 의하여 정당화되어왔다.¹⁵⁾ 이 개념에 따르

12) 미국수의학협회

13) Lisa Hanks/이상윤 옮김, 동물윤리의 정의, CATFANCY 1997년 4월, 동물보호연합게시판, 랫처스 대학의 동물권리법의 권위자이며 동물권리입문의 저자인 프랜시온의 주장임.

14) Francione, *Animal, Property, and Law*, temple University press, 1995, p. 18~19.

15)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육류를 먹지만,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도살되는지를 생각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가축들이 고통 없이 도살되기를 바랄 것이며, 몇몇은 그 목적을 위해 일한다. 암 연구에 사용되는 실험용 쥐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쥐의 잠재적인 고통을 넘어서, 암이 없는 세상의 가능성을 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애완견을 잘 대우하지만, 그들을 동등하게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절할 대우가 동물들에게 제공되어야 하지만, 인간의 행복을

면 우리가 일반적 의미에서 오락 또는 식량이나 과학, 의복을 위해 동물을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는 한, 그리고 동물이 재산으로 간주되는 한, 법은 재산으로서의 동물을 그 행위를 용인하는데 요구되는 것 이상의 행위를 용인하지는 않는 정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해석할 방법이 없다. 다시 말해서 금지되고 있는 유일한 행위는 근거 없는 가학 또는 불필요한 고통과 죽음뿐인 것이다. 법원은 오래 전부터 동물보호법들이 일상적인 언어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학대”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해왔다. 그보다 학대는 “아무런 정당한 목적 없이 행해진 것”을 의미해야 한다. 이것은 농부들이 마취를 하지 않고 동물을 거세하거나 뽑을 자르는 것을 법이 금지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즉 이러한 행위들은, 그것이 매우 명백하다 할지라도 먹이로서 사회적으로 승인된 방법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농부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동물을 굶어 죽게 내버려둔다면, 그가 사회적으로 인정된 관습을 넘어서서 고통과 죽음을 가져왔고, 동물 자원을 완전히 불필요하게 남용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법은 그 행위를 처벌할 것이다.¹⁶⁾ 왜냐하면 이것은 동물 재산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산의 전체적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 결과, 법원은 일반적으로 동물 재산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기준 수립을 동물 이용자들의 관습적 행동에 미루어왔다. 만일 그 행위가 원인으로서는 법적으로 승인을 받은 행동으로 요구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관습적으로 그 행동의 일부로 간주된다면, 그 행위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동물 이용자는 동물을 상업적으로 혹은 오락 자원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동물을 잘 돌보고 있는지를 재확인하는 것이고, 상식적 측면에서 동물의 복지는 학대를 되도록 피하고 동물에게 친근하게 대하는 것에 대한 평균인의 막연한 관심이다. 또한 인도적인 측면에서 동물의 복지는 상식적인 동물의 복지에 비해 더 원리에 충실하고, 깊이가 있으며, 더 잘 훈련받은 것으로서 동물에 대한 학대에 반대하지만, 동

희생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동물의 복지에 동의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근본생각은 동물들이 중요하지만, 인간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16) Francione, supra, p.26.

물을 이용하는 회사나 관습을 거부하지는 않는 것이다. 더 나아가 동물 복지가 어떤 종류의 생체 해부를 허용하면서도 고통은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¹⁷⁾

동물의 복지를 강조할 경우 인간은 소비자로서 또 다른 장점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방목한 소의 우유나 산란닭의 사육이 제대로 된 경우 제품의 질이 좋고, 동물을 도살할 때의 조건이 좋은 경우에 동물로부터 나오는 축산물의 품질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다. 이는 소비자와 동물 종에 맞는 사육환경의 상관관계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¹⁸⁾

(2) 동물권

현재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에 대한 인식의 출발점을 단순한 인도적 입장에서 관심이나 애정의 차원, 즉 동물복지의 차원을 넘어서서 동물권¹⁹⁾을 인정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동물이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요구할 자격을 가지고 그러한 주장이 타인에게 인정되는 것이다. 원래 ‘동물권’은 당초 법철학적 사고의 소산이었는데, 인권의 주창자들이 인권이 모든 인간에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본성과 특성을 강조한 것처럼 동물권의 주창자들은 인간적인 특성인 이성, 언어, 감정, 자기인식 등을 동물도 공유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²⁰⁾

구체적인 동물권운동의 초석을 쌓은 것은 1770년대 영국에서 결성된 ‘동물학대방지협회(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SPCA)²¹⁾’이었으나, 현대로 넘어와 루스 해리슨의 『동물기계(Ani-

17) M. Bekoff, *Encyclopedia of Animal Rights and Animal Welfare*, Greenwood Press, 2004, p. 47.

18) Holger Herbrüggen, *Österreichisches Tierschutzrecht im Lichte der europäischen Integration*, Braumüller, 2001, S. 8~9.

19) 17세기 토마스 트리온은 기독교신학이론의 구조 속에서 동물과 관련하여 ‘권리’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20) Susan L. Goodkim, “The Evolution of Animal Right”, *Columbia Human Rights Law Review*, Vol. 18 No. 2 Spring 1987, pp. 260~261, 박원순의 글에서 재인용, 331면.

21) 박원순, ‘동물권’의 전개와 한국인의 동물인식, 형평과 정의 9집, 327면. 프란스 파

mal Machine)』(1964)²²⁾, 오스트레일리아 Monash 대학의 인간생물윤리학 연구소장이었고, 현재 프린스턴 대학의 생명윤리학 교수인 피터 싱어(Peter singer)의 『동물해방』(1975)²³⁾과 톰 레이건의 『채식주의의 도덕적 기반』은 동물의 도덕적 권리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들은 진화생물학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과 다른 동물간의 종의 경계가 불분명해졌으며, 동물들이 고통, 고생, 기쁨,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다는 점, 즉 자신의 환경이 좋거나 나쁘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동물의 권리를 주장했다.²⁴⁾ 평등의 기본원리를 인간의 모든 집단에 확대시키듯이 다른 종, 동물에게도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⁵⁾

위 콕이나 안나 킹스포드 등은 19세기 동물 생체실험 반대운동의 선구자들이었다. 그러나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영국과 미국에서의 생체실험 반대운동은 동물의 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출발하였으나 철학적 논리의 부족으로 당시 발흥하고 있던 생물학 및 의학계로부터 ‘감상주의’, ‘반과학적’, ‘과학의 무지’ 등의 비난을 받아야 했다.

22) 이 책은 영국 대중들에게 대규모의, 고도로 강화된 동물 농업, “공장농업”을 소개하고 있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많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기초로 하여 동물들이 모두 집안에서 사육될 수 있고, 먹이를 주는 것, 물을 주는 것, 다루는 것도 좀더 쉽게 기계화될 수 있고, 통제가 가능했으며, 생산 특성을 위해 좀더 정교한 유전자 선별 방법과 결합하여 이러한 요소들은 좀더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동물 농업을 가능하게 했지만, 그러한 환경 하에서 동물 행동의 대부분이 금지되었다는 점을 고발했다. 이에 근거해, 영국정부는 Brambell 위원회라는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소한도로 모든 농장의 동물들이 어려움 없이 뒹굴 수 있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고, 일어나고, 드러눕고, 팔다리를 뻗을 수 있는 충분한 행동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25년 후에 가축복지위원회는 이것들을 좀더 광범위한 권고사항으로 수정했고, 5가지 새로운 자유는 가장 평범한 행동 양식을 보일 자유, 굶주림과 갈증 또는 영양 부족으로부터의 자유, 부적절한 보금자리로부터의 자유, 질병과 상처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동물 농업은 Brambell 위원회가 보고서를 발간한 이래로 계속 강화되어서 이제는 어떤 부가적인 복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폐쇄적인 감금을 포함하고, 자극이 없는 농업 체도에 있어서 현대 동물 농업이 (1)동물의 건강, (2)고통과 고뇌, (3)사회적 행동을 포함해서 이동과 다른 행동의 제한과 연관되어 있다는 데 주요한 비판이 집중된다. 이러한 문제보다도 대규모의 동물 생산이 환경에 미칠 부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동물에게 투여된 약과 항생제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우려가 더 많이 제기된다. M. Bekoff, Encyclopedia of Animal Rights and Animal Welfare, Greenwood Press, 2004, p. 47.

23) 이는 동물권운동의 성격으로 불리운다. 피터싱어(김성한 옮김), 동물해방, 인간사랑, 1999으로 번역본이 나와있다.

24) 마크 롤랜즈(윤영삼 옮김), 동물의 역습, 2004, 달팽이, 57면.

25) M. Bekoff, Encyclopedia of Animal Rights and Animal Welfare, Greenwood Press, 2004, p. 47. 그러기에 생쥐 한 마리의 고통이나 인간의 고통이나 같고, 인간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배려를 받을 만하다고 말한다. 그는 동물들에게 동

피터 싱어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원리가 동물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동물들의 도덕적 지위를 무시해서는 안 되며, 인간과 동물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존중과 배려로 동물을 대하라는 요구는, 인간의 '상응한 관심'과 동등한 비중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요구일 뿐이다. 무조건 인간의 생명이 동물의 생명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 즉,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들의 최대다수를 위한 최대의 선을 행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하며, 동물들을 일정한 목적을 위해 이용함으로써 얻어진 선이 인간이 그 동물들에게 끼치는 해악을 초과하는지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한다.²⁶⁾

이에 현대 미국 철학자인 톰 레이건은 피터 싱어의 개인적인 동물들 혹은 사람들의 고통이 만약 다른 인간 혹은 동물들의 최대에게 이익이 된다면 허용된다는 생각에 반대하였다. 톰 레이건은 모든 유기체들은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고 믿고, 믿음, 욕망, 인식, 기억, 미래에 대한 감, 정체성 등을 가지고, 이득을 얻거나 해악을 입을 수 있는 모든 생물은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에서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생물체들에 해를 입히는 행동을 하였을 때, 그 생물체들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동물들에게도 인간에게 보장되는 것과 같은 권리(이 경우에는, 학대와 고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 견해에 따라 동물권 운동가들은 동물들이 인간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할 가치가 있으며, 인간이 동물들을 실험이나 산업에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믿고, 인간과 같이, 동물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그들의 삶을 살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²⁷⁾ 따라서

등한 배려를 하지 않는 인간은 인종주의자 혹은 성차별자인 사람들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본다.

26)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의 복지가 소수의 고통보다 중요한 것인가? 암을 치료하는 것이 실험용 동물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가를 고려하라는 것이다. <http://www.admh.org/basic/liberation2.htm>.; Paige M. Tomaselli, "International Comparative Animal Cruelty Laws", *Michigan State University-Detroit College of law review* 2003.

27) M. Bekoff, *Encyclopedia of Animal Rights and Animal Welfare*, Greenwood Press, 2004, p. 47; 동물권리옹호론 (1)~(4), <http://www.admh.org/>

동물 권리의 관점은 인간이 실험실, 농장 또는 야생 상태에서 동물들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그러한 관습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물을 이용함으로써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 예컨대, 돈이나 편의, 미각의 즐거움, 또는 지식의 향상의 형태로든 그것은 나쁘게 얻은 것으로 보고, 채식주의를 택하기도 한다. 여기서의 동물보호는 동물자체를 목적으로 하는데, 강력한 행동을 취하는 단체도 있다.²⁸⁾

(3) 신동물복지주의

동물 권리에 대한 이론이 근본적으로 동물 복지 이론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물 권리 이론과 소위 “동물 권리 운동”이라고 불리는 사회현상 간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권리의 입장을 명백히 수용하고 있음에도

basic/animalrights3.htm.

28) 동물의 윤리적 취급을 위한 사람들(PETA, 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이라 불리는 기구는 그 철학을 한단계 더 나아가 수용한다. PETA는 알렉스 파초와 잉그리드 뉴커크에 의해 설립된 국립, 비영리 동물 보호 단체이다. 그 단체의 25만이 넘는 회원들은 그들이 동물의 권리라고 인식하는 것들을 확립하는데 헌신하고 있다. 최근의 인터뷰에서, 뉴커크는 “동물 해방은 인간 종을 분리하지 않는다. 생쥐 한 마리나 개 한 마리나 소년 한 사람이나 같다.”고 말하고, 동물들이 음식, 의복 혹은 의료 실험을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화의 늦은 속도에 실망한, 일부 동물권 단체는 실험에서 그리고 양모 농장에서 동물들을 “해방” 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불법행위들을 실행해왔다. 그 동물 해방 전선(ALF)은 이러한 단체들 중 단연 악명이 높다. 1976년 영국에서 설립된 ALF는 현재 미국 내에 활동적인 구성원들을 가지고 있다. 1982년 미국 내에 그 조직이 설립된 이래로, 1993년 1월까지 그 조직은 생물의학 시설, 연구 실험실, 양모 농장들에 86건의 기습을 감행하였다. ALF는 다른 목표들을 소이탄으로 공격하고 파괴하였다. 예를 들어 텍사스 Tech 대학에서, ALF 회원들은 연구자들의 실험실을 파괴하였고, 5마리의 고양이를 훔치고, 그 연구자에게 AIDS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적혀있는 콘돔을 보냈다. 그 연구자들은 급성 유아 사망 증상(SIDS), 한살 이하의 아이들을 느닷없이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질병을 연구하기 위해 고양이들을 실험에 사용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행동들은 ALF를 FBI의 국내 테러리스트의 목록에 오르도록 만들었다. 대부분의 다른 준법 시민들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은 ALF 회원들이 비윤리적인 파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는다. 동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파괴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해도 되는가? 심지어 많은 동물 복지 단체들도 이러한 행동은 실제로 그들의 운동 목적을 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ALF 회원들은 이러한 행동들이 이 사회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

불구하고, 현대의 동물 보호운동은 동물 권리 이론을 사회 변화에 대해 실제적이고 이론상으로 일관적인 전략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권리라는 용어가 대부분 동물의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여겨지는 조치를 묘사하는데 사용된다. 예컨대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에게 좀더 넓은 우리를 제공하자고 제안한다면, 그러한 조치는 동물복지주의자의 개혁에 대한 고전적인 예를 나타낼지라도 동물 권리를 신장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딜레마가 존재하게 된다.²⁹⁾

현대 동물의 권리 운동은 분명히 동물 권리를 동물 복지 조치를 계속해서 고수함으로써만이 달성 가능한 이상적인 상태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동물 복지의 다른 양식으로 받아들여 동물 권리의 철학적 원리를 분명히 거부하고 있다. 이 뒤섞인 입장은 - 장기의 목적은 동물의 권리이지만, 단기 목적은 동물의 복지이다 - 소위 “신동물복지주의”라고 불리며, 그 옹호자들은 “신동물복지주의자”이라고 일컬어진다. 예컨대, 신동물복지주의자들은 오늘날의 좀더 깨끗한 우리와 미래의 텅빈 우리간에 어떤 원인 관계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동물 “권리” 운동은 권리라는 언어의 사용과 제도화된 동물 이용을 폐지하자는 장기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데올로기적이면서 실제적인 협의 사항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것은 적어도 어떤 형태의 동물 이용을 용인하는 사람들이 승인한 조치들과 구별될 수 없다.³⁰⁾

제 2 절 실정법상의 동물보호

미국의 경우 보통법 하에서 동물에 대한 학대는 범죄가 아니었다. 반학대법을 도입하기 전에 가축들은 법상의 부당한 해악(malicious mischief)이나 침해의 금지를 통해서 최소한의 보호를 받아왔다. 부당한 해악법은 전형적으로 위반행위가 상처를 입거나 죽은 동물의 소유자에게 해악을 가하는 것이 명백할 것을 요구했고, 그 행위가 소유자가 아닌 동

29) M. Bekoff, *Encyclopedia of Animal Rights and Animal Welfare*, Greenwood Press, 2004, p. 45.

30) M. Bekoff, *Encyclopedia of Animal Rights and Animal Welfare*, Greenwood Press, 2004, p. 47.

물에게 해악을 가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당한 해악을 구성하지 않았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소유자에 대한 해악을 그 사건을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추정하거나 추론하도록 허용한다. 부당한 해악법으로부터 반학대법으로의 변화는 단순한 재산의 보호로부터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물에 대한 관심으로의 변화를 나타낸다. 주들은 19세기 중후반에 반학대법(Anti-Cruelty Statute)을 도입하기 시작했다.³¹⁾

반학대법의 목적은 “동물과의 교류에 있어서 인간 본성에 내재하는 악과 무관심의 경향을 비난함으로써 권리에 대한 인도적 고려와 잔인한 생명체의 감정을 깨우치게 함으로써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는 “가장 거대하고 고귀한 것으로부터 가장 작고 아주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창조에 의해서 인간에 종속되는 것으로 만들어진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어떤 추상적인 권리를 인식하고 보호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언급된다. 그 의무의 내용은 대부분 동물을 “인도적으로” 다룰 의무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도적 처우의 권리는 동물에 속한 유일한 이익은 인간의 이익 - 그의 이익은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보호된다 - 에 대해 형량되어야 할 이익을 가질 자격이므로 실제로는 전혀 권리가 아니다. 반학대법은 “동물 그 자체의 보호를 위한”의도뿐 아니라 “동물을 보호하는 것과 공중 도덕을 보호하는 것”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전자의 목적은 후자에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대부분의 법원은 이러한 법들이 인간이 서로에게 잔인하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동물의 잔인한 처우를 인간의 잔인한 처우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고 주장되기도 한다.³²⁾

이에 비하면 유럽의 동물보호의 개념은 미국보다 훨씬 앞선다. 동물의 권리를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동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한 독일 기본법 제20a조는 주목받을 만 하다. 독일기본법은 1994년 신설된 제20조 a(자연적인 생활기반의 보호)규정에 2002년 7월 26일 동물보호도 포함시켜 국가기관에게 종족보호를 넘어서 윤리적인 동물보호, 즉 개

31) Gary L. Francione, *Animal, Property, and Law*, temple university press, 1995, p. 121.

32) Gary L. Francione, *Animal, Property, and Law*, temple university press, 1995, p.122-123.

별 동물들을 고통과 상해로부터 보호해 줄 의무를 부과하였다.³³⁾ 이로써 동물들은 “생명체를 가진 동료(Mitgeschöpf)”로서 존중받게 된 것이나, 이것이 동물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인간과 동물의 동등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³⁴⁾

민법상으로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는 동물을 물건과 동일하게 보지 않고, 사람-동물-재산이라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1990년 8월 20일 독일 민법 제90조 a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특별히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다른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물건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 준용된다”고 규정하였다.³⁵⁾ 이는 동물을 감정을 가진 동료

33) 독일기본법 제20조 a : 국가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에서 자연적인 생활환경과 동물들을 헌법에 적합한 질서의 범위 내에서 입법, 법령에 적합한 행정과 사법을 통해 보호한다. 기존의 독일기본법 제20조 a에서는 자연적 생활환경의 보호의 개념 속에서 동물들이 자연적인 생활환경의 일부일 것을 상정하여 동물들에게 각 개체로서 헌법적인 보호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헌법재판소판례에서도 공공복리와 관련하여 동물보호의 위치가 논의되어왔고, 헌법적 지위를 갖지 못해 동물보호와 종교, 학문의 자유와의 충돌이 있어왔다. Tierschutzbericht 2003 - Bericht über den Stand der Entwicklung des Tierschutzes,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5/723(26.03.2003), S. 15. 통독이후 구동독의 주(브란덴부르크, 작센, 튀링엔과 베를린)는 국가목표로서 “동물은 생명체이며 동료로서 그 습성에 맞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주헌법에 규정하였다. 그 이후 서동독지역의 주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기본법에 “und die Tiere”가 삽입되기 이전에 모두 “동물은 생명체이며 동료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였다. 따라서 2002년의 동물보호의 기본권편입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 Kluge(Hrsg.), Tierschutzgesetz Kommentar, Einführung Rn. 97~98.

34) D. Murswiek (in: M. Sachs(Hrsg.)), Art. 20a zu GG Kommentar 3. Aufl. Rn. 31b.

35) 같은 내용을 오스트리아는 1988년 민법 제285조 a에 규정하였다. 스위스는 2002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국민발안을 위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Stiftung für das Tier im Recht, 『Tier, keine Sache - Dokumentation den Nationalrat』, Zürich, den 1. August 2002. 새로 도입된 스위스민법 제641a조 제1항은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의 법체계를 본받아 사람과 물건이라는 이분법을 벗어나 사람, 동물과 물건이라는 삼분법을 도입하였다. 동물은 더 이상 물건으로 다루지 않고, 감정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생물로서 그들의 고유성을 고려하게 되었다. 각 동물에게 중에 걸맞는 존재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고, 동물권을 부여하자는 전문가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동물의 민법상의 새로운 지위는 유실물, 상속 또는 이혼법, 손해배상계산 또는 채무, 파산법에 따른 동물압류불가등에 영향을 미친다.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 척추동물들만을 자신의 보호범위에 두고 있는 동물보호법과는 스위스 민법 제641a조 제1항은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 예를 들어 거미, 꿀벌, 달팽이와 같은 무척추동물들에게도 적용된다. Tier keine Sache - Schweiz, <http://www>.

(fühlende Lebewesen und Mitgeschöpf)로서 물건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가치인식의 변화된 표현이며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 또한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³⁶⁾ 여러 동물복지단체들이 동물을 감정이나 인식이 있는 ‘유정물’로 다시 분류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최근 유럽고등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렇게 바뀌면 동물을 사육하고 수송하는 방식 하나 하나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며 이로 인해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³⁷⁾ 결론적으로 동물보호는 이해집단간의 긴장상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의 실정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³⁸⁾

tierimrecht.ch/de/tierkeinesache/schweiz/grundsatzbestimmung.php.

36) Kluge(Hrsg.), Tierschutzgesetz Kommentar Einführung, Rn. 120.

37) 마크 롤렌즈(윤영삼 옮김), 동물의 역습, 2004, 달팽이, 352면.

38) 동물보호론자와 동물이용자간의 이해의 차이는 동물의 도살을 금지하는 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제3장 각국의 동물관련법제, 인도적 도살 참조.

제 3 장 외국의 동물관련법제

동물을 불필요한 학대로부터 보호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각국의 동물관련법제는 과거부터 동물을 대해온 관행 등에 따라 그 발전정도가 상이하다.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축산물의 수입, 수출규제에 있어서 혹은 실험결과발표와 관련하여 실험동물사용에 공인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해야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지침을 받아들인 독일과 가장 우수한 동물보호법을 가진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는 스위스의 동물관련법제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제1절에서 동물관련법의 체제와 공통되는 중요내용을 언급하고, 제2절에서는 농장동물의 처우, 운송 및 도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제3절에서는 실험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제4절에서는 반려동물에 관한 내용을 각국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 1 절 외국의 동물보호법과 관련법령

각국은 우선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거나 학대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적 성격을 띤 동물보호법 내지 동물복지법이 있고,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구체적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 개별규정들을 두고 있다.

1. 미 국

(1) 동물복지법의 연혁

1965년까지 미국에서는 동물의 보호를 다루는 단 두 개의 연방법(1958년의 Humane Slaughter Act와 1959년의 Wild Horses Act)이 존재했다. 미국의 동물복지법³⁹⁾은 Johnson 대통령에 의해 서명된 1966

39) US Animal Welfare Act, 7 U. S. C. §§2131~59. 원문은 <http://www.ani-mallaw.info/statutes/stusawa.htm>, Chapter 54. Transportaion, sale, and handling of certain animals.

년의 실험실동물복지법(Laboratoy Animal Welfare Act)으로 시작되었다.⁴⁰⁾ 이 법은 당시 가정에서 기르던 고양이와 개를 훔쳐 병원과 연구실험실에 팔리는 관행에 대한 대중의 항의로 제정된 법이었기 때문에, 실험실에서의 동물의 사용을 규제하려는 내용보다는 애완동물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⁴¹⁾ 실험실동물복지법의 전문에는 그 목적으로 “개와 고양이의 소유자들이 개나 고양이를 도난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미 도난당한 개와 고양이의 판매나 사용을 금지하고, 연구시설에서 사용될 예정인 특정 동물이 인도적인 보호와 처우를 받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⁴²⁾

그 후 1970년에 이 법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범위를 확장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동물복지법이라 불리우게 되었고, 그 후 1976년, 1985년, 1990년, 2002년의 수정법들은 동물 보호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 중에는 통증완화제의 투여,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격 요건, 실험의 중복을 줄이거나 방지하고, 실험의 요건을 심사하기 위한 제도적인 심사 기구의 설립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⁴³⁾

(2) 동물복지법의 체제와 주요내용

이 법은 특정동물들의 소유자나 판매자를 규제하기 위한 내용과 실험, 동물원, 서커스, 애완동물가게에서의 동물들의 취급에 관한 기준으로, 주거, 식품, 위생, 의료보호와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위반시 형벌,

40) M. Bekoff, *Encyclopedia of Animal Rights and Animal Welfare*, Greenwood Press, 1998, p. 225.

41) 어떤 펜실베이니아의 “개유괴” 사건과 뉴욕주 개 상인의 집에 감금되어있던 개의 상태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던 Life 라는 잡지에 실린 사진이 LAWA의 창설의 숨겨진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의회와 백악관에 보내진 동물 보호법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는 인권과 베트남 전쟁 사안을 다룬 편지보다 훨씬 많았다. 상원의원 Dole은 1966년 법을 명백히 “1966년의 개 유괴에 관한 법”이라고 특징지었다. Gary L. Francione, *Animals, Property, and Law*, Temple University Press, Philadelphia 1995, p. 190.

42) Gary L. Francione, *Animals, Property, and Law*, Temple University Press, Philadelphia 1995, p. 191.

43) M. Bekoff, *Encyclopedia of Animal Rights and Animal Welfare*, Greenwood Press, 1998, p. 225.

과태료처분, 허가의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식량으로 사용되는 농장동물의 처우 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연구, 전시, 동물원, 동물격투와 경매에 사용되거나 이를 위해 길러진 일부동물에만 적용된다. 이 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연방규제령(Code of federal Regulation) 제9편 동물과 동물생산물을 두고 있다.⁴⁴⁾ 제1장은 제2장과 제3장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2장은 행정적 요건을 제공하고, 피규제자가 져야 할 제도적 책임을 제시한다. 그리고 제3장은 동물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동물의 인도적 취급, 보호, 처우와 운송에 대하여 자세히 다룬다.

1) 동물복지법의 체제

제54장 특정동물의 수송, 판매 및 거래

§2131 정책에 대한 의회의 견해

§2132 정의

§2133 거래상과 전시자의 면허제

§2134 거래상 또는 전시자의 유효한 면허 획득을 위한 조건

§2135 거래상 또는 전시자에 의한 개와 고양이의 처분기간

§2136 연구기관, 매매자, 운반자와 면허받지 않은 전시자의 등록

§2137 면허있는 거래상 또는 전시인과 권한있는 경매기관을

제외한 실험연구기관에서 고양이나 개를 사들이는 것을 금지함

§2138 미국정부기관에 의한 개나 고양이의 판매가 권한있는 경매기관

이나 면허있는 거래상이나 전시자를 제외하고는 금지됨

§2139 원칙-대리인 관계 설정

§2140 거래상, 전시자, 연구소, 중재자와 운반자의 기록유지

§2141 동물의 인식표와 표기

44) 9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 원문은 <http://www.access.gpo.gov/cgi-bin> 참조.

- §2142 경매에 있어서 인도적인 기준과 요구조건들의 기록보존
- §2143 상업적으로 동물을 운송하는데 있어서의 인도적 기준
- §2143(b) 연구시설위원회: 구성, 회원, 기능 등
- §2144 미국정부기관에 의한 동물을 위한 인도적인 기준
- §2145 농무부에 의한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간의 자문과 협력
- §2146 부서에 의한 행정과 강제
- §2147 법적으로 구성된 법적인 강제에 의한 조사
- §2148 [삭제]
- §2149 면허위반
- §2150 [삭제]
- §2151 규칙 및 규정
- §2152 전제조건외의 분리
- §2153 집행의 비용과 권한
- §2154 효력일
- §2155 의회의 대변인과 상원의장에게 해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
- §2156 동물싸움 금지
- §2157 비밀거래의 유출에 대한 벌칙
- §2158 애완동물의 보호
- §2159 금지명령의 적용을 위한 기관

2) 동물복지법상의 주요내용

① 동물복지법의 대상동물

미국 동물복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에서 정한 동물의 정의를 충족시켜야 한다. 동물복지법 §2132(g)는 동물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동물”은 살아있거나 죽은 개, 고양이, 인간을 제외한 영장류, 기니 피그, 햄스터, 토끼 또는 장관이 연구, 시험, 실험이나 전시의 목적에 사용된다고 결정하거나 그러한 목적에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거나 애완 동물인 다른 온혈동물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러한 용어에는 (1)연구에 이용될 목적으로 사육된 새, Rattus 류의 쥐, Mus 류의 쥐, (2)연구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말, (3)가축이나 가금류에 한정되지 않고 음식이나 섬유질로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예정인 다른 농장 동물, 또는 동물의 영양, 번식, 사육이나 생산 효율성을 증진시키거나 음식이나 섬유질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예정인 가축이나 가금류는 제외된다. 개에 관해서는 그 용어는 사냥, 경비 또는 번식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는 모든 개들을 의미한다.

동물의 정의는 계속 변화되었다. 1966년 실험실동물보호법에서는 “살아 있는 개, 고양이, 원숭이(인간을 제외한 영장류인 포유류), 기니피그, 햄스터와 토끼”라고 정의하였으나, 1970년 개정에서는 기존에 열거한 동물이 생존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과 “장관이 연구, 테스트, 실험 또는 전시목적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결정한 것과 같은 다른 온혈 동물 또는 애완동물로 이용되는 온혈 동물”로 범위를 확장시켰다. 1976년 개정으로 인해서 연구에 이용될 목적으로 사육된 조류, 실험용 마우스, 랫드, 산업목적의 가축, 가금을 동물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⁴⁵⁾ 최근 동물보호단체들은 실험동물과 관련하여 마우스, 랫드 등을 제외대상목록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입법에 반영되지 못하였다.⁴⁶⁾

따라서 미국 동물복지법상의 대상은 물고기, 갑각류, 곤충류, 양서류인 냉혈동물과 온혈동물중에서 조류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실상의 동물복지법이라기보다는 포유류복지법으로 불리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⁴⁷⁾

45) Gary L. Francione, *Animals, Property, and Law*, Temple University Press, Philadelphia 1995, pp. 192-195.

46) David Favre, Overview of US AWA, Animal Law Web Center, may 2002, in: <http://www.animallaw.info/articles/ovusawa.htm>.

47) David Favre, “Overview of US AWA”, Animal Law Web Center, may 2002, in: <http://www.animallaw.info/articles/ovusawa.htm>.

② 동물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그들의 면허 내지 등록의무

동물복지법은 그 정의규정에서 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연구 시설⁴⁸⁾, 거래상⁴⁹⁾, 전시자⁵⁰⁾, 중간 취급자⁵¹⁾, 운반자⁵²⁾에 대한 정의, 그들의 의무 및 면허취득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거래상과 전시자들은 면허가 있어야 하고(\$2133~2135), 면허가 없는 모든 연구시설이나 중간상, 전달자와 면허가 없는 전시자들은 등록하여야 한다(\$2136). 또한 연구시설들은 면허를 가지지 않은 상인으로부터 개나 고양이를 구입하는 것이 금지된다(\$2137). 이는 과거 실험동물복지법의 제정목적이 흠쳐진 애완동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함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는 조문이라 할 수 있다.

③ 동물에 대한 인도적 취급

동물의 인도적 취급에 대해서는 농무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거래상이나 연구시설에 의한 동물의 인도적 취급, 보호,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2142), 잠자리, 먹이, 물, 위생상태, 환기, 극한의 추위와 기온으로부터 보호해줄 안식처와 종에 따른 구분, 적절한 수의학적 치료에 관한 최소한의 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때 수의학적 치료에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마취약, 무통약, 또는 진정제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동물의 운동과 영장류의 심리학적인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적합한 물리적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기

48) 어떤 학교(초, 중등 학교 제외), 조직, 단체 또는 연구, 테스트나 실험에 살아있는 동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사람들.

49) 연구 목적을 위해서 동물들을 사고 팔거나 운반하는 것에 관련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육 목적 또는 전시 목적 또는 애완동물로서 동물을 공급하는데 관련이 있는 사람들(단 소규모의 애완동물 샵은 제외).

50) “거래 또는 거래에 영향을 주거나 앞으로 영향을 줄 대중에 대한 분배를 통해서 얻은 동물들을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전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된다. 이것은 경매, 서커스, 동물원이나 축제를 포함하지만, 애완동물 샵이나 가축을 보여주는 행사, 로데오, 그리고 다른 이용 관행은 제외했다.

51) 거래에 있어서 동물의 운송과 관련한 동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52) 비행기, 철도, 전동기 운수업, 항로, 또는 동물을 운반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기업의 운영자.

준을 공표해야 한다. 연방규제령 Title 9 동물과 동물생산물 편에서는 Part 3는 동물별로 Subpart A는 개와 고양이, Subpart B에서는 기니아 피그와 햄스터, Subpart C에서는 래빗, Subpart D에서는 영장류, Subpart E에서는 해양포유류, Subpart F에서는 그 외의 온혈동물에 대한 인도적 취급, 보호, 처우와 이동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먹이, 물, 거처, 위생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만을 제시하고 있다.⁵³⁾ 또한 경매에 있어서나(§2142), 상업상의 이유로 동물이 운송될 때(§2143)의 인도적 기준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연구시설, 상인, 전시자들과 경매 운영자들이 동물을 운송하고 구입, 취급 또는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서 인도적인 기준과 기록 보존의 요건을 공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3) 동물복지관련 연방법

동물복지법보다 더 먼저 연방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은 1877년에 제정된 동물을 이동시킬 때 매 24시간마다 4시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28시간법과 인도적인 도살방법에 관한 법(Humane Slaughter Act)이 있었다. 이에 대한 연혁과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4) 각 주의 반학대법

각 주는 연방동물복지법의 적용을 받지만,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는 자유롭게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고유법을 제정하고 있다. 이 주법은 연방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각 주의 반학대법은 그 법을 위반하는 행위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적당한 처벌을 다루는 규범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⁵⁴⁾

53) Kali S. Grech, "Detailed Discussion of the Laws Affecting Zoos", *Michigan State University College of Law Review*, Animal Legal & Historical Center 2004. Available from <http://animallawinfo/articles/dduszoos.htm>.

54) Paige M. Tomaselli, "International Comparative Animal Cruelty Laws",

각 주의 반학대법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지 않는다는 그 본질적인 내용에는 공통되나, 반학대법 위반의 제재수단, 적용이 배제되는 동물들에 대하여는 각기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선, 동물학대금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동물로는 연구활동, 야생동물, 농장의 가축, 식용으로 쓰기 위한 도축행위, 해충방지, 로데오, 동물원⁵⁵⁾, 서커스 등을 인정하는 주가 있는가 하면, 미네소타, 미시시피, 오클라호마 주의 경우는 동물학대금지법의 적용을 면제하는 예외조항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보통 야생동물이나 농장에서 사육되는 동물 같은 일정한 범위의 동물을 전체적으로 동물학대금지법에서 배제시킴으로써 동물보호를 위한 다른 법조항들을 확연히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⁵⁶⁾

다른 주의 모델이 된 뉴욕주는 농업과 시장법(AML) Chapter 69 consolidated Law, Article 26 동물 편 353에서 “야생동물이건 가축이건, 혹은 자기소유의 동물이건 아니건 간에 모든 동물에 대해서, 그 동물을 괴롭히는 행위, 혹사시키는 행위, 고통을 주는 행위, 잔인하게 때리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부상·불구·절단·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 자... 혹은 이를 교사하거나 알선한 자... 혹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든 동물학대 행위를 촉진시키거나, 방조한 자는 경범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반학대법률은 동물자체를 보호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

Michigan State University- Detroit College of Law Review, 2003; http://www.animallaw.info/articles/art_details/print.htm.

55) 펜실바니아 주법도 포획상태에 있는 동물원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가 특별히 규정되어 있다. 동물원동물의 경우는 연방동물복지법의 적용을 제한적으로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동물원 동물의 대부분은 9 CFR 제3조 F 항(subpart)의 규율을 받는 데, 이 조항은 개, 고양이,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 인간을 제외한 영장류와 해양 포유류가 아닌 온혈 동물들의 인도적 취급, 보호, 처우와 이동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동물원 동물의 복지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 가운데 하나는 9 CFR 제2조 131인데, 이것은 동물의 취급과 관련되어 있다. 이 조항은 동물을 다루는 사람들이 동물복지법의 범위 내에서 행해야 할 보호를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굶기거나 약물을 통한 훈련 방법의 사용이 제한되고, 동물은 적당한 시기 동안 적합한 지역과 온도에서 전시되어야 한다. 또한 이 조항은 어린 동물, 즉 수행 동물에 대한 보호의 기준을 제시하고, 대중과 동물간에 상호작용이 있는 곳에서 양자간의 안전을 보장한다. Kali S. Grech, *supra*. 동물원의 기원에 대해서는 니켈 로스웰스(이한중 옮김), 『동물원의 탄생』 지호 2003.

56) 각주의 동물학대금지법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는 정소영, 미국의 동물학대금지법, 연세법학연구 제9집 제2권, 연세법학회 2003. 2, 290면 이하.

회구성원인 인간의 도덕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하여지기도 한다.⁵⁷⁾ 그러나 최근 미국의 23개 주에서는 흉악한 동물학대행위에 대하여 단순한 경범죄로 처벌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동물보호를 위한 진일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독 일

(1) 동물보호법

독일 동물관련법령의 기본법인 동물보호법(Tierschutzgesetz)은 1933년 11월 14일에 제정된 『제국동물보호법』을 기초로 하여 1972년 7월 24일 동물보호법(BGBI I. 1277)으로 대폭 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⁵⁸⁾

1) 동물보호법의 체제

동물보호법의 구성은 총 13장으로 기본원칙, 동물의 소유, 동물의 도살, 동물의 수술, 동물실험, 기초교육, 보습교육 또는 발전교육을 위한 수술과 조치, 재료, 생산물 또는 장기의 생성·획득·보관 또는 증가를 위한 수술이나 처리, 동물의 사육과 동물의 거래, 운송, 거래 및 소유의 금지, 동물보호를 위한 기타사항, 법률의 집행, 형벌 및 벌금규정, 경과 및 종결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의 동물보호법

제 1 장 기본원칙

제1조 목 적

제 2 장 동물의 보유

57) Paige M. Tomaselli, "International Comparative Animal Cruelty Laws", Michigan State University - Detroit College of Law 2003; http://www.animallaw.info/articles/art_details/print.htm.

58) 독일 동물보호법(Tierschutzgesetz)의 번역문으로는 최윤철, 국회 해외입법, 『동물보호법』 2004. 11.

- 제2조 동물소유자의 의무
- 제2a조 규칙제정의 권한
- 제3조 금지된 행동
- 제 3 장 동물의 도살
 - 제4조 척추동물의 도살
 - 제4a조 온혈동물의 도살
- 제 4 장 동물에 대한 시술
 - 제5조 마취
 - 제6조 신체절단
 - 제6a조 제5조와 6조의 적용배제
- 제 5 장 동물실험
 - 제7조 개념규정; 전제조건
 - 제8조 척추동물에 대한 실험의 허가
 - 제8a조 신고의무
 - 제8b조 동물보호담당관
 - 제9조 동물실험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 제9a조 동물실험에 대한 보고서
- 제 6 장 교육을 위한 조치와 침해
 - 제10조
- 제 7 장 옷감, 생산품 또는 생체기관의 제작, 획득, 보존 또는 증가를 위한 시술과 처치
 - 제10조 a
- 제 8 장 번식, 동물의 사육, 동물거래
 - 제11조 허가
 - 제11a조 보고의무
 - 제11b조 사육금지
 - 제11c조 어린아이에 대해 척추동물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
- 제 9 장 반입, 통상 및 보유금지
 - 제12조

제10장 동물보호를 위한 그 밖의 규정

제13조 설비나 물질사용금지

제13a조 동물보호개선을 위한 법규명령의 발령의 권한

제11장 법률의 시행

제14조 세무서의 협력

제15조 권한

제15a조 연방부서에의 보고

제16조 감독

제16a조 위반의 제거와 방지를 위한 규정들

제16b조 동물보호위원회

제16c조 보고의무

제16d조 일반적인 행정규칙의 발령

제16e조 연방정부에의 보고서제출

제16f조 회원국에 대한 자료제공의무

제16g조 회원국에 대한 권한

제16h조 효력의 확대

제16i조 중재기관, 중재계약, 중재법원의 절차

제12장 벌칙 및 범칙금규정

제17조 벌칙

제18조 질서위반

제19조 동물압류

제20조 동물소유금지

제20a조 일시적인(잠정적) 금지

제13장 경과규정 및 종료규정

제21조 경과규정

제21a조 유럽연합의 법률행위의 집행을 위한 법령

제21b조 위험발생시의 지체없는 법규명령의 발령

제22조 삭제

2) 주요내용

① 동물보호법상의 동물의 정의

독일 동물보호법은 그 대상이 되는 동물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이 법의 제정이유에서 포괄적인 생명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하여 살아있는 동물이라면 하등동물이나, 사람에게 해로운 동물이라 할 지라도 이 법에서 말하는 동물의 범위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는 우선적으로 고통과 손상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⁵⁹⁾ 이렇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는 척추동물과 온혈동물의 도살에 대하여 따로이 정하고⁶⁰⁾, 척추동물을 합리적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혹행위로 큰 고통과 상해를 가하거나, 오래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고통이나 손상을 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는데 반해(제17조 제1항 제1호), 그 외의 동물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큰 고통과 손상을 줄 경우에는 질서위반법에 의한 처분을 받는다(제18조 제2항)는 조문에서 짐작할 수 있다.⁶¹⁾ 미국의 동물복지법이 죽은 동물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독일의 동물보호법은 살아있는 동물에 한정되고, 수정란은 어미동물의 신체의 일부로서 보호된다고 본다.⁶²⁾

② 동물보호법의 목적

독일 동물보호법의 목적은 인간이 동물의 동료로서 그들의 생명과 복지를 보호해야될 책임을 규정하는데 있으며, 어느 누구도 합리적 이유없이 동물들에게 고통, 질환, 상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생명의 보호는 먹거리로서, 모피제공자로서의 동물을 죽이는 것과 충돌

59) BT-Drucksache VI/2559, S. 46.

60) 동물보호법 제4조와 제5조.

61) von Loeper, §1 Rn. 1, 7, in: Hans-Georg Kluge (Hrsg.), Tierschutzgesetz Kohlhammer, 2002; Hirt/Maisack/Moritz, §1 Rn. 11, Tierschutzgesetz Kommentar, Verlag Franz Vahlen München, 2003.

62) Hirt/Maisack/Moritz, Tierschutzgesetz Kommentar, Verlag Franz Vahlen München, 2003, S. 50.

하게 된다.⁶³⁾ 사냥법, 자연보호법 및 전염병법은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제13조 제1항).

③ 동물의 보호의 기준

독일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유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처우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동법 제2조는 동물을 보유하거나 돌보거나 돌볼 사람에게 동물의 종과 그 요구에 맞게 적정하게 먹이며, 돌보고, 행동할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하고, 동물들에게 고통이나 피할 수 있는 불쾌감 또는 손상⁶⁴⁾을 끼칠 정도로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조문은 모든 동물들, 즉 이용동물, 가정동물, 반려동물, 동물원, 농장동물 및 야생동물에게도 적용되며 이동수단으로서의 동물, 도살될 동물, 유기된 동물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⁶⁵⁾⁶⁶⁾

④ 금지행위목록의 제시

이와는 달리,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동물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목록을 제3조에서 열거하고 있다: 혹사, 훈련이나 운동경기 등에 출전하는 동물에게 약물을 사용한다든지, 고통을 부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병이 든 동물을 경매에 붙이거나 판매하는 경우, 유기하는 경우, 동물에게 심각한 고통, 질환이나 상해를 끼치는 교육이나 훈련, 영화 촬영, 출연, 광고선전 등, 난폭성을 훈련시키는 행위, 건강상 필요가 없

63) von Loeper, §1 Rn. 13~15 in: Hans-Georg Kluge (Hrsg.), Tierschutzgesetz Kohlhammer, 2002.

64) Schmerz(고통)이란 가능한 방법으로 혹은 실제 조직을 해치는 자극에 의해 신경 충격에 대한 주관적인 해서 또는 인지의 결과이다. Leiden은 단순한 불쾌감보다는 강하고, 성가심의 정도보다 많고 시간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정신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Schaden은 상해를 입히는 것이다.Holger Herbrüggen, Österreichisches Tierschutzrecht im Lichte der europäischen Integration, Braumüller, S. 59~63.

65) von Loeper, §2 Rn. 4 in: Hans-Georg Kluge (Hrsg.), Tierschutzgesetz Kohlhammer, 2002.

66) Hirt/Maisack/Moritz, Tierschutzgesetz Kommentar, §3 Rn.1~4, Verlag Franz Vahlen München, 2003, S. 50; Ort/Reckewell, §3 Rn. 3 in: Hans-Georg Kluge (Hrsg.), Tierschutzgesetz Kohlhammer, 2002.

는데도 강제로 사료를 먹이거나, 심각한 고통, 질환 또는 상해를 야기하는 사료를 먹이는 행위, 전기기구를 사용하여 동물의 운동력을 제한하거나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8조에 의거 질서위반범으로서 처벌받게 된다.

(2) 기타 법령

연방법인 동물보호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0년 2월 9일 제정된 동물보호법시행규칙이 있으며, 법규명령으로서 동물보호 - 이용동물사육규정⁶⁷⁾, 동물보호 - 개사육규정⁶⁸⁾, 동물보호 - 도살규정⁶⁹⁾, 동물보호 - 동물운송규정⁷⁰⁾, 실험동물신고규정⁷¹⁾이 있다. 이는 동물보호를 위한 유럽협정을 비준하여 국내법화시킨 것이다. 동물보호법과 기타법령의 내용은 제2절 이하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3. 스위스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동물보호법을 가진 나라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 이는 인간의 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반영된 것이다. 1893년 스위스 국민은 연방상원이나 의회의 제안에 반대하여 연방헌법에 도살

67) 농업에 사용되는 동물과 동물적인 생산물을 획득하기 위해 사육되는 동물을 위한 보호규정(Verordnung zum Schutz landwirtschaftlicher Nutztiere und anderer zur Erzeugung tierischer Produkte gehaltener Tiere bei ihrer Haltung(Tierschutz-Nutztierhaltungsverordnung - TierschNutzTV vom 25. Oktober 2001 BGBl. I S. 2759), 2002년 2월 28일 개정되었음(BGBl. I S. 1026).

68) Teirschutz-Hundeverordnung vom 2. Mai 2001 (BGBl. I S. 838).

69) Verordnung zum Schutz von Tieren im Zusammenhang mit der Schlachtung oder Tötung (Teirschutz-Schlachtverordnung-TierSchlV) vom 3. März 1997 (BGBl. I S. 405), 1999년 11월 25일 개정(BGBl. I S. 2392).

70) Verordnung zum Schutz von Tieren beim Transport (Teirschutztransportverordnung-TierSchTrV) vom 11. Juni 1999 (BGBl. I S. 1337), 2001년 10월 29일 개정(BGBl. I S. 2785).

71) Verordnung über die Meldung zur Versuchszwecken oder zubestimmten anderen Zwecken verwendeter Wirbeltiere) vom 4. November 1999(BGBl. I S. 2156), 2001년 10월 29일 개정됨(BGBl. I S. 2785).

금지규정을 삽입했다. 이는 1973년까지 동물보호의 영역에서 유일한 헌법규정이었다. 현재는 동물학대금지규정이 동물보호법에 편입되었으나 과거에는 동물학대죄가 형법 제264조에 있었다. 그밖에 전통적으로 스위스의 농업관련법률에서 동물들이 보호되었다.⁷²⁾ 그 목표는 적합한 동물의 생산물을 섭취함으로써 인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인간을 중심에 둔 동물보호는 현재 동물보호의 입장인데, 이는 동물 자체를 위한 보호에 근거한 인식에는 반대된다.⁷³⁾

(1) 동물보호법의 연혁

1978년 3월 9일에 제정되고 1981년 7월 1일에 발효한 스위스 동물보호법⁷⁴⁾은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신체적인 상해를 주거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인간의 정당성이 없는 행동에 대하여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다. 가능한 한 최대의 방법으로 동물의 요구를 고려해야만 하지만, 법률은 동물들에게 원칙적인 삶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 경찰법적인 위협방지적 요소를 담고 있었다.

이러한 골격입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연방상원의회는 1981년 3월 27일 동물보호규정을 의결하였다. 동물의 신체기능과 행동이 방해받지 않고, 그들의 적응능력을 넘어서지 않도록 다루어져야 하고, 먹이주기, 돌보기, 기거장소는 동물들의 요구에 적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⁷⁵⁾

72) Vollzugsprobleme im Tierschutz, Bericht des Bundesrates an die Geschaeftsprüfungskommission des Ständerates vom 8. September 1999, S. 9485. <http://www.bvet.admin.ch/info-sevice/d/gesetzgebung>.

73) Unser Tierschutzgesetz, http://www.bvet.ch/tierschutz/d/gesetzgebung/unser_tschg/Tschg-kommentiert.

74) 1981년 7월 1일에 발효하고, 1991년 3월 22일에 개정되었음. 원문은 <http://www.admin.ch/bvet>에서 볼 수 있음. 총 12장 38개 조문: 일반원칙, 동물사육, 동물거래와 선전, 동물이동, 동물침해, 동물실험, 동물살처분, 동물에 대한 금지된 처분, 동물보호프로젝트에 대한 연구지원, 행정조치와 법적 보호, 형벌규정, 경과규정으로 구성됨.

75) 총 12장 77개 조문: 일반적인 동물보유규정, 동물보유자, 가내동물(일반적 규정, 소, 돼지, 집토끼, 가금, 개), 동물보호소와 가정동물, 야생동물(일반, 야생동물보유의 허가), 동물의 거래와 선고, 동물이동, 실험동물(실험동물, 전문인력의 교육 및 지속교육,

(2) 주요내용

스위스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행동을 규정하여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적용대상은 척추동물이다(동물보호법 제1조). 동물보호법 제2조는 동물은 최대한 그들의 요구들을 고려해서 다루어져야 하고, 동물과 관련 있는 자는 사용목적이 허용하는 한 그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누구도 동물에게 고통, 질환, 상해를 끼치거나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미니-마그나 카르타를 설정했다고 한다.

또한 동물의 복지, 동물사육의 지향점, 정당하지 못한 고통, 상해 및 두려움을 주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 밖에 사육시설기준에 맞게 사육된 농장동물의 판매, 동물의 거래와 선전, 야생동물의 보유와 동물실험을 위한 허가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동물보호법은 연방내각에게 동물보유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 동물보호규칙이다. 이 법은 금지와 처벌규정 및 행정조치를 포함하고 있다.⁷⁶⁾

주목할 만한 것은 동물보호법 제22조의 동물학대금지목록이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강하게 태만하거나 불필요한 긴장상태를 유발시키는 것이 금지된다는 일반조항 외에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 악의적으로 동물을 가두어 놓고 사격하여 동물을 죽이는 것, 동물끼리 서로 죽이도록 시키는 것, 개를 훈련시키기 위해, 혹은 잔혹함을 시험하기 위해 살아있는 동물을 사용하는 것, 동물이 고통, 불쾌감, 상해를 겪게 될 것이 명백한 데도 전시, 홍보 또는 영화촬영 및 비슷한 목적으로 동물을 사용하는 것, 가정이나 업소에서 보유하는 동물을 악의적으로 유기하는 것, 개의 귀를 자르거나 성대수술을 시키거나 고통을 표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수단을 사용하는 것,

동물실험의 허가, 통제와 신고, 동물실험을 위한 위원회, 보고서와 통계), 동물의 살처분, 고통해소를 위한 의무의 예외, 금지된 행동, 연구보고서, 행정조치, 결론(집행, 기존법률의 변경, 경과규정, 효력발생).

76) Unser Tierschutzgesetz, http://www.bvet.ch/tierschutz/d/gesetzgebung/unser_tschg/Tschg-kommentiert.

동물의 능력을 상승시키기 위해 물질을 투여하는 것이다. 연방상원은 동물에 대한 그 밖의 금지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제 2 절 농장동물관련법제

일반적으로 농장동물(farm animal)은 인간이나 동물의 소비를 위해 고기나 우유, 알, 가죽, 털 또는 다른 신체 부분이나 생산물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사육되는 동물을 말한다. 농장동물이 동물보호법 내지 동물학대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과 애완동물간의 관계와 인간과 농업용 동물간의 관계에는 차이가 있어 농업용 동물을 다루는 방식에는 도덕적 단절이 존재한다.⁷⁷⁾

과거 가축농장의 경우에는 동물들이 햇빛도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었지만, 현재 공장농장형태로 변하면서 동물들은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 이러한 농장동물사육실태를 고발하는 저서⁷⁸⁾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공장식 농업은 비인도적인 동물의 처우, 가난한 환경적 영향, 노동자들에게 열악한 작업 조건과 동물에게 투여된 약과 항생제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우려가 더 많이 제기된다.⁷⁹⁾ 하지만, 동물에게 좀더 많은 행동의 자유를 부여하게 될 경우 축산업자에게는 생산비용의 증가를 의미하게 된다는 점과 현재 친환경농법으로 길러진 유기동물에 대한 수요의 증가도 같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⁸⁰⁾

77) Paige M. Tomaselli, *International Comparative Animal Cruelty Laws*, Michigan State University-Detroit College of Law 2003, <http://animallaw.info/articles/ddusicacl.htm>.

78) 집단적인 공장형사육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마크 롤렌즈(윤영삼 옮김), 동물의 역습, 달팽이, 2004 음식으로 먹기위한 동물사육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책으로는 1964년 영국에서 출판된 Ruth Harrison의 저서 “동물 기계”로서 영국 대중들에게 대규모의 고도로 강화된 동물 농업을 소개하고 있다. *Encyclopedia of Animal Rights and Animal Welfare*, p. 170.

79) Bekoff, *Encyclopedia of Animal Rights and Animal Welfare*, p. 170; Jaime Kate Olin, “Model National Animal Welfare Legislation: Commentary”, *Michigan State University College of Law Review*, 2004, <http://animallaw.info/nonus/articles/armodellegislationpaper.htm>.

80) Bekoff, *Encyclopedia of Animal Rights and Animal Welfare*, p. 170.

1. 미 국

(1) 농장동물에 대한 처우

미국 51개주 중 25개 주의 동물학대금지법은 관습적 농업 관행을 동물학대의 범주에서 제외함으로써 식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른 동물들은 농장에 있는 동안 일반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농장동물이 반학대법의 보호범위에 들어가는 다른 주의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예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조명, 온도, 통풍과 같은 많은 영역의 규제가 결여되어 있다.⁸¹⁾

이러한 법적 미비상황에 대하여 동물보호단체인 PETA는 3개의 거대 패스트푸드사에게 그 회사들의 공급업체에서 벌어지는 비양심적인 관행을 개선시키라는 압력을 행사하여 소기의 동물보호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맥도날드사는 2000년 8월 자사에 연간 15억개의 달걀을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암탉을 인도적으로 다루고, 사육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토록 전했다. 또한 이 내용에는 각각의 케이지를 50% 넓히고⁸²⁾, 달걀생산을 자극하기 위해 물과 사료의 공급을 중단하는 ‘강제몰탕’의 금지와 베테리 케이지 안에 뺨뺨하게 들어찬 어린 병아리들이 서로를 쪼아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리를 절단하는 야만적인 ‘부리자르기’의 중지가 포함되었다. 2001년에는 버거킹과 웬디스도 이 내용을 따르겠다고 하였다.⁸³⁾

(2) 동물의 운송

과거 서부에서 키워진 농장동물들이 먹이, 물, 적절한 환기 없이 장시간을 시카고에 있는 도축장까지 가는 길은 매우 멀어, 스트레스를 받고,

81) Paige M. Tomaselli, “International Comparative Animal Cruelty Laws”, *Michigan State University-Detroit College of Law Review*. 2003 Available from <http://animallaw.info/articles/ddusicacl.htm>.

82) 미농무성이 권고한 최소한의 기준에 따라 닭들에게 1피트에서 1피트 반 스퀘어에 해당하는 공간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83) 그러나 페타는 동물해방과 완전한 채식주의를 지향하는 동물권단체들에게는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Steve Best (박은정 번역), 동물복지인가 동물권리인가 - 잘못된 대립허물기 -, 동물보호연합(www.kaap.or.kr)게시판.

영양이 부족한 상태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죽거나 상처를 입은 상태로 발견되기도 하였다. 1866년 미국 뉴욕 자선가인 헨리 버그는 동물에 대한 잔인함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였다.⁸⁴⁾

1) 28시간법

동물학대를 방지하는 첫 번째 연방법은 1873년의 28시간법이다. 이 법은 철도나 배를 통해 운송되는 가축에게 먹이와 물, 휴식(매 24시간마다 4시간의 휴식, 그래서 28시간법이라 불리 운다)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는데, 1905년까지 연방농무부는 이를 강제할 수 없었고, 1906년에야 비로소 법이 제정되었다.⁸⁵⁾

이 법은 미국의 각 주 사이의 운송, 혹은 미국영토 내에서 운송되는 동물들을 보호한다. 연속해서 동물들을 물과 휴식 없이 운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는데, 짐칸 내부에서 쉬고, 움직이고 먹고 마실 것이 충분하다면, 중간에 내릴 필요가 없다. 휴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동물이 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운송자는 반드시 모든 가축들이 동시에 누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바닥은 견고해야 한다.⁸⁶⁾

이 법에는 몇 가지 결함이 존재하는데, 만일 28시간의 제한기간이 밤에 끝나거나 소유자나 그 동물을 운반하기 위해 가둔 사람이 36시간까지 기한 연장을 요구한 경우에 추가로 8시간 동안 더 갇혀 있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비행기나 배로 이동하는 경우 또는 주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고, 운반되는 동물의 나이, 건강이나 종을 고려하지 않는다. 법이 철길의 “cattle cars” 뿐만 아니라 트럭에도 적용되

84) Paige M. Tomaselli, “International Comparative Animal Cruelty Laws”, *Michigan State University-Detroit College of Law Review* 2003, Available from <http://animallaw.info/articles/ddusicacl.htm>.

85) Rowan, Andrew N., *FARM ANIMAL WELFARE*, 1999, p. 58.

86) Mose, Amy, “What About Wilbur? Proposing a Federal Statute to Provide Minimum Humane Living Conditions for Farm Animals Raised for Food Production”, *University of Dayton Law Review*, Fall, 2001. Available from <http://www.animallaw.info/articles/arus27udtnlr133.htm>. II. A. 2. a.

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왜냐하면 법제정당시에는 트럭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최고 형벌은 500달러밖에 되지 않으므로, 대규모의 농장은 이 규정을 준수하기보다는 벌금을 내는 쪽을 택하기 때문에,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또한 식량으로 사용될 동물의 이동을 규제하는 조사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⁸⁷⁾

2) 운송에 관한 주법

주법도 동물의 운송을 규제한다. 대부분의 주들은 동물의 운송이 인도적 방법으로 행해져야 함을 요구한다. 일부 주들은 특히 운송법에서 농업용 동물을 제외한다. 농업용 동물을 제외하지 않는 주들은 전형적으로 위반시 적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가지고 있다. 휴식을 가지지 않은 채 운송 가능한 시간은 주마다 다르지만, 많은 나라들이 기차나 트럭을 타고 계속되는 여행에서 28시간 또는 36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말들은 천장이 있는 두 칸으로 만들어진 소 트럭으로 운송되어야 한다. 그러한 처우는 가축의 인도적 처우보다는 농업 로비에 대해 더 지대한 관심이 있음을 나타낸다.⁸⁸⁾

(3) 인도적 도살방법에 관한 법

1958년에는 허버트 험프리 상원의원의 강력한 지지로, 연방 인도적 도살법(Humane Slaughter Act)이 통과되었다.⁸⁹⁾ 이 법은 불필요한 고

87) Paige M. Tomaselli, *supra*. 유럽의 많은 국가들과 달리 이동 계획, 조사보고서, 운송자의 증명서도 요구되지 않는다.

88) Paige M. Tomaselli, *supra*.

89) 1900년대 초 많은 저널리스트들이 동물의 도살자들을 규제하기 위해 더 나은 법을 제정하려는 운동에 동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엠티 싱클레어의 *The Jungle*에서 시카고의 도살장들의 불결한 환경을 기술하였다. 동물들은 거기에서 잔인하게 도살되었고, 병든 동물과 건강한 동물의 구분 없이 피가 아무데나 묻어있었고, 감염되고 부패된 고기가 시장으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이로 인해 의회는 1906년 도살장에서의 위생상태를 규제하는 *the Pure Food and Drug Act*를 통과시켰다. 불행히도, 그것은 또한 동물들에게 더 혹독한 결과를 낳았다. 그 법은 동물들이 도살된 이후 서로의 피 위에 눕혀지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동물들은 줄이나 사슬에 의해 다리 하나가 목인 채 매달린 채 참수되었다. 이러한 관행은 1958년 의회가 *the Humane Slaughter Act*를 통과시켰을 때에야 중단되었다. 이 법은 동

통을 금지하고 도살 방법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가축의 도살을 규제하는데, 의식으로서 행해지는 도살과 가금류의 도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이 법은 인도적 도살방법에 관한 법(Humane Method of Slaughter Act, HMSA)으로 개명되었다.⁹⁰⁾ 그 내용은 도살장에서의 도살 전과 도살과정중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것인데, 도살장에 있는 동물을 가두는 우리의 상태 및 도살장으로 옮겨지는 도로가 동물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경사가 급격해서는 안 될 것, 가축이 걷는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운반되어서는 안되며, 전기침과 다른 도구들은 가능한 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불구의 동물을 끄는 것도 금지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축을 도살하기 전에 반드시 기절시키거나 마취시키도록 하여 고통은 최소화되어야 하고, 동물은 굴레를 씌우거나 들어올리거나 도살되기 전에 무의식상태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1978년에 개정되어 외국에서 축산물가공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미국의 인도적 도살기준에 따라 도살하지 않은 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⁹¹⁾

그러나 이 법은 연방정부나 그 이하 단체에게 고기를 파는 도살업자들에게만 적용되므로, 미국 내의 6,100명의 도살업자 중 4,700명이 전혀 도살 전 기절시키는 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적 적용을 담보하기 어렵다.⁹²⁾ 미국의 18개 주에서는 식용을 위한 도살행위에 대하여 동물학대금지법의 적용에서 제외시키는데, 몇몇 주에서는 반드시 인도적인 방법을 쓰도록 구체화한 예도 있다. 미국의 27개 주는 주법으로 인도적인 도살법을 통과시켜, 연방정부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⁹³⁾ 1995년에 가금류에 대해서도 인도적인 방법으로 도살해야 한다는 법안이 소개되었으나 그 후속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캘리포니아주만이 가금류에도 인도적 도살법이 적용된다.⁹⁴⁾

물들이 도살되기 전에 기절시킬 것을 요구한다. Bekoff, *Encyclopedia of Animal Rights and Animal Welfare*, p. 170; Marna Owen, *supra* p.28~31.

90) 9 CFR 313 Humane Slaughter of Livestock.

91) Rowan, Andrew N., *FARM ANIMAL WELFARE*, 1999, p. 59.

92) Bekoff, *Encyclopedia of Animal Rights and Animal Welfare*, p. 170.

93) Paige M. Tomaselli, *supra*.

94) Rowan, Andrew N., *FARM ANIMAL WELFARE*, 1999, p. 59.

2. 독 일

(1) 농장동물에 대한 처우

동물보호의 원칙으로서 독일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보유하거나 돌보거나 돌볼 사람은 동물의 종과 그 요구에 맞게 적절하게 먹이며, 돌보고, 행동할 수 있도록 기거시켜야 하고, 동물들에게 고통이나 피할 수 있는 불쾌감 또는 손상을 끼칠 정도로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농장동물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된다.

동물보호법 제4장에서는 동물에 대한 시술로서 고통이 수반되는 시술이 필요한 경우 자격 있는 자로부터 마취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장동물과 관련하여, 생후 4주 이내의 숫송아지, 수돼지, 숫양, 숫염소에 대한 거세시술, 생후 6주 이내인 송아지에 대한 뿔의 제거 또는 뿔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시술, 생후 4주 이내인 돼지와 생후 8일 이내의 양에 대한 꼬리절단 시술, 탄력성 있는 고리를 수단으로 하는 생후 8일 이내의 양에 대한 꼬리절단시술, 어미 또는 다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생후 4주 이내인 돼지에 대한 어금니 연마 시술, 가금의 용도로 기르는 생후 1일 이내의 병아리의 발톱 있는 뒷발가락의 제거시술, 표식을 하기 위해 귀나 어깨에 문신을 하거나 마이크로칩을 주입하거나 압인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마취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 제3항).

척추동물의 신체부분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인 절단이나 기관 또는 조직의 전체적인 또는 부분적인 적출 또는 파괴는 금지되지만, 관할 행정기관이 가금의 부리 끝의 절단, 신축성 있는 고리를 이용하여 생후 3개월 이하의 숫송아지의 꼬리 끝부분 절단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동물의 본래 이용목적에 불가피하다는 것을 명시해야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제3항).

연방성은 농업용 가축의 보유를 위한 우리체계 및 우리 시설에 대해서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78년 1월 25일의 ‘농사 목적에 사용되는 동물의 보호에 관한 유럽 협약’⁹⁵⁾은 각 회원국을 구속

95) Europäisches Übereinkommen zum Schutz von Tieren in landwirt-

하는데, 독일의 경우는 2001년 10월 25일에 독일 동물보호 - 이용동물 사육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총 4개의 장, 18개 조문으로 이루어졌다.⁹⁶⁾

이 법의 대상인 이용동물이라 함은 농업적인 이용동물 및 식량, 울, 가죽, 모피의 생산을 위하거나 다른 농업적인 목적으로 사육되는 기타 온혈척추동물을 말한다.⁹⁷⁾ 일반규정으로서 이용동물의 우리나라 축사는 동물의 건강을 해치거나 위협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져야 하며, 동물이 충분히 먹이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되어야 하고, 동물간의 최소한의 간격이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공기정화시설, 먹이기계 또는 그 밖의 기계적인 설비는 동물의 기거범위에서 최소한도의 소음이 날 정도로만 설치되어야 한다. 조명시설, 비상전력시설, 경보장치는 하루에 한번씩 감독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제3조, 제4조).

제2절에서는 송아지의 보유에 관한 요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송아지는 배설물이나 짚이 묻지 않을 수 있는 건조한 공간에서 사육되어야 하며, 자유롭게 눕거나 일어설 수 있는 우리에서 자연스러운 활동을 할 수 있고, 먹이와 물을 방해받지 않고 먹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틈이나 구멍이 있을 경우 송아지를 다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가능한 한 송아지가 머무는 곳에 골고루 최소한 80룩스에 이르는 빛바람을 유지해야 하며, 섭씨 25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우리 내의 공기속의 유해물질의 함유량도 제한된다(제6조).

송아지의 주수에 따라 송아지를 한 마리씩 개별수용할 경우의 필요면적과 집단사육할 경우의 필요면적을 구분하고 있다. 집단사육에 있어서는 송아지가 150kg 미만일 경우 한 마리당 1.5㎡, 150~220kg일 경우는 마리당 1.7㎡, 220kg이상일 경우에는 1.8㎡을 요구하고 있다(제10조).

schaftlichen Tierhaltungen(ETS087) vom 10. März 1976. www.bvet.ch/info-service의 유럽이사회협약에서 원문참조.

96) 2002년 2월 28일 개정을 거쳐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원문은 Hans - Georg Kluge(Hrsg.), Tierschutzgesetz, Kohlhammer, 2002, Anhang 2, S. 466f.

97) 동법 제2조 제1호.

제3절에서는 산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중요내용으로는 닭장은 적어도 바닥은 200cm X 150cm,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적어도 200cm 떨어져야 하며, 산란계가 중에 적합하게 먹고, 마시고, 쉬고, 모래목욕을 할 수 있고, 바닥에 철망이 없는 특별한 공간에서 알을 낳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제13조 제2항). 동물들이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조명을 해야하고, 이는 먹이를 주는 사람이 확인하여야 한다. 건물은 환풍이 가능해야하고, 공기 중 암모니아의 함유량이 1m³당 10cm³을 넘어서는 안 된다(제13조 제4항). 동물들이 동시에 이용하더라도 필요한 활동이 가능한 운동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6,000마리 이상의 산란계가 공간적인 분리없이 함께 사육되어서는 안 된다.

닭장에 인공적인 조명을 사용할 경우 적어도 밤중 8시간은 조명을 줄여야 하는데, 어둠속에서 다칠 위험없이 휴식할 수 있도록 0.5 룩스 이하의 조명을 설치한다(제14조). 유럽연합은 2012년까지 배터리 케이지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했다. 조만간 돼지사육에 관한 내용도 이 법에 구체화되어 삽입될 것이다.⁹⁸⁾

(2) 동물의 운송

독일에서는 유럽연합의 지침의 내용을 담⁹⁹⁾ 운송에 있어서의 동물보호규정을 1999년 6월 11일에 공포하였다. 총 제7장 45개조에 달하는 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송에 있어서의 동물보호를 규정하는데, 자연인과 동행하는 애완동물의 상업적이지 않은 이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조). 일반원칙으로서

98) Hans-Georg Kluge (Hrsg.), Tierschutzgesetz, Kohlhammer, 2002, S. 477.

99) 유럽의회는 1991년을 전후해 동물의 운송과 관련한 많은 지침들을 규정했다. 내부시장의 관점에서 살아있는 동물과 그 부산물의 공동체내부의 거래에 있어서의 수의학적이고 동물번식적 규제에 관한 지침(Richtlinie 90/425/EWG), 제3세계로부터 공동체에 수입된 동물의 수의학적 통제를 위한 기본원칙의 확정을 위한 지침(Richtlinie 91/496/EWG), 운송에 있어서의 동물보호에 관한 지침(Richtlinie 91/628/EWG), 송아지보호를 위한 최소요건(Richtlinie 91/629/EWG), 돼지보호를 위한 최소요건에 관한 지침(Richtlinie 91/630/EWG) 및 도살시점에 있어서의 동물보호에 관한 지침(Richtlinie 93/119/EG).

수의학적 치료를 위하여거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이동이 아니라면 병들거나 다친 척추동물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을 금지한다(제3조 제1항). 운송이나 동물의 접수를 위한 장소에 필수적인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척추동물은 그 신체적인 상태가 계획된 이동을 허락된다(제4조 제1항). 척추동물의 이동시에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많은 척추동물이 움직일 때는 각각의 동물들이 방해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 공간의 측정은 동물의 상태, 연령, 크기, 무게, 종류 및 이동의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제2항). 운반 도중에 동물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의학적 치료를 제공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다치거나 아픈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 만약 상처나 질병이 심각하거나 전염성이 있는 것이면 가능한 한 인도적으로 그 동물을 안락사 시켜야 한다. 운반 도중 동물이 죽는 경우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생적으로 처리해서 그 원인이 같이 타고 있던 다른 동물에게도 확산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사를 해야 한다(제3항). 또한 먹이와 물은 일정한 간격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2시간이상 한 곳에 머물 경우에는 먹이와 물을 제공하여야 한다(제4항).

동물을 싣는 경우에도 고통, 상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척추동물을 싣어야 한다. 특히 포유류는 머리, 귀, 뺨, 다리, 꼬리 등을 높이 들어올려서는 안 된다. 동물을 싣는데 있어서도 바닥은 동물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동물들이 이동수단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동물을 모는데 있어서 전기적인 물이도구의 사용은 금지된다(제5조 제1항, 제3항). 척추동물을 이동시키는데는 동물에게 고통이나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같이 적재하는 것을 금지한다(제6항).

먹이와 물을 충분히 공급하여야 하며, 동물을 이동시키는 자는 이동시에는 동물의 소유자와 주소, 동물을 싣은 일시, 목적지 등을 적어서 보유하여야 하며, 관청의 허가를 받은 통지서를 원본 내지 복사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영업적으로 척추동물을 운송하는 자는 관할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8조, 제10조, 제11조).

용기에 담아서 동물을 운송함에 있어서의 동물보호는 제2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척추동물이 담긴 용기는 선적함에 있어서 던지거나 떨어뜨려

서는 안되며, 동물을 용기에 담아 보내는 자는 운송에 걸리는 시간이 12시간 또는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동물이 수신되기 전까지 먹이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동물을 과식시켜서도 안 된다. 만일 되돌아올 경우를 예상해서 필수적인 물과 먹이를 확보해주어야 한다(제20조 제3항).

제3장은 농장동물의 보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담고 있다. 가축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젖을 내는 소, 양, 염소는 최대한 각 15시간마다 젖을 짜주어야 하고, 뿔을 제거한 소와 뿔이 있는 소는 분리해서 운송하여야 한다(제23조 제2항). 병이 들거나 다친 농장동물에 대해서는 운송이 불가능한 농장동물로 분류하여 이동 전, 이동시에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기타 다른 동물, 가정에서 키우는 토끼, 새, 개, 고양이 및 기타 포유동물과 조류의 운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5장은 국경을 넘는 운송에 대하여, 제6장은 관청의 권한과 질서위반의 유형, 제7장은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이에 부속되는 별표에서 선적기구의 필요조건(별표 1), 농장동물의 운송에 있어서의 물, 먹이간격 및 휴식(별표 2), 동물운송용기(별표 3), 필요공간과 분리(별표 4), 이동계획서(별표 5), 국제적인 동물운송확인서(별표 6), 동물의 동일품확인통제의 시행(별표 7)을 두고 있다.

(3) 인도적 도살

1) 동물보호법

독일 동물보호법 제4조에서는 척추동물은 마취시켜서 고통을 느낄 수 없도록 한 후에 도살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척추동물들이 특별히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동물보호 - 도살규정이 있다. 도살규정 제3조 제1항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흥분, 고통, 불쾌감 또는 상해를 일으키는 경우에 이와 같은 도살방법이 아니라더라도 동물을 죽일 수 있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통 없는 상태에서 서만 도살할 수 있다. 만일 척추동물을 도살하지 않고 사냥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또는 기타 법규정에 따라 도살하거나 해충퇴치의 방법으로 도

살되는 경우에 필요이상의 고통없이 도살되어야 한다. 척추동물의 도살은 그에 대한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¹⁰⁰⁾ 제4a 조에서는 온혈동물은 피를 빼기 전에 마취하였을 때에만 도살되어야 한다. 예외규정은 긴급하거나 의식적 도살의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도살되기 전에 반드시 기절시켜야 한다고 명시한다.¹⁰¹⁾

2) 동물보호-도살규정

독일은 유럽연합이 제정한 도축의 시점까지의 동물보호에 대한 지침(Richtlinie93/119/EG)¹⁰²⁾을 1997년 3월 3일 도살과 관련된 동물보호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국내법화시켰고, 1999년 11월 25일에 개정되었다. 이 법은 총 5장 18개 조문으로 이루어졌다.

제1장은 도축장에서의 동물을 다루는 것, 도살 전에 기절시키는 것에 적용된다. 동물은 동물들에게 더 이상 흥분이나 고통, 상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다루어지고, 기절시키고 마취되어야 하며 도살되어야 한다. 기절시키거나 마취시키는 도구들은 빠르고 효력있는 마취와 도살이 가능하도록 사용되어야 한다(제3조). 동물을 기절시키거나, 마취하거나 도축하는 자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지녀야 한다(제4조 제1항). 도축장내에서 동물을 이동시킬 경우에도 고통이나 상해를 가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특히 동물의 민감한 부분을 때리거나 찌르거나, 발길질을 해서는 안 된다(제5조 제1항). 동물이 운반될 때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동물들을 안내하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소과의 동물이나 돼지에게 전기 충격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정확한 근육에 사용해야 하며, 충격을 받았을 때 움직일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제2항).

제2장은 도축장에 대하여 규정한다. 동물은 우호적이지 않은 기상 조건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바닥은 너무 미끄럽거나 젖어있어도 안

100) Kluge, §4 Rn. 1~2, in: Hans-Georg Kluge(Hrsg.), Tierschutzgesetz, Kohlhammer 2003.

101) Paige M. Tomaselli, supra.

102) EU는 농업용 동물의 도살을 규제하기 위한 조약의 이유로 다음 세 가지를 들고 있다. ①도살될 예정에 있는 동물들을 보호를 보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②가능한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도살 방법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③도살 도중에 동물에게 가해진 두려움, 고난과 고통이 육질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된다. 도살장에는 먹이를 먹고 여물을 마실 수 있는 가려진 공간을 두어야 한다. 적대적인 동물들은 따로 놓아두어야 한다. 동물의 건강 위치는 하루에 두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고, 아프거나 약하거나 상처 입은 동물은 즉시 도살되어야 한다(제7조).

제3장은 물고기의 도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제4장은 동물의 기절, 마취, 도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온혈동물에 있어서 동물이 이전에 마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다는 것은 금지된다. 전기마취기구는 정확하고, 필요한 정도의 기간만큼 사용되어야 한다(제12조). 동물은 죽음에 이르는 상태까지 무감각상태에 있도록 마취되어야만 한다(제13조 제1항). 제5장은 질서위반과 경과규정을 내용으로 한다.¹⁰³⁾

3. 스위스

(1) 농장동물의 처우와 운송

농장동물을 사육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사육시설로 관할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동물보호법 제5조). 동물들이 운송 중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선적, 하역, 먹이, 보살핌등을 규정하고, 온도, 환풍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연방상원에서 필요한 문서작업과 유능한 관리자 요구조건을 포함하여 운송 절차를 규정한다(동물보호법 제10조). 동물보호규칙에서는 여행을 하기 위해서 건강 상태가 좋을 것과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운송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휴식이나 먹이를 먹기 전에 동물이 여행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을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은 필요한 만큼 물과 먹이를 먹을 수 있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⁰⁴⁾

(2) 인도적 도살

스위스 연방동물보호법 제7장과 스위스 동물보호령 제7a장은 스위스에서 동물 도살에 지침이 되는 법을 제공한다. 포유류는 피를 흘리기 전

103) 원문은 Kluge, S. 491f.

104) Unser Tierschutzgesetz-kurz kommentiert.

에 기절시키지 않고서는 도살을 금지하며, 대규모시설의 경우에는 가금류 또한 기절시켜야한다는 것을 연방상원이 규정할 수 있다(제20조). 기절시키는 방법은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야 하며, 만약 효과가 지연된다면 고통이 없어야 한다(제21조).

동물보호법시행규칙은 도살될 운명에 처한 동물을 운반하는 것으로부터 실제로 도살하기까지를 자세히 규율한다.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경우에도 동물의 건강과 보호를 검사해야 하며, 만일 동물이 도착하자마자 탈 것에서 내릴 수 없다면 이 운송수단에는 적당히 환기를 시켜야 하며 추운 날씨로부터 보호해주어야 한다. 만일 동물이 구금되어야 한다면, 혹독한 날씨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적당한 크기의 공간이어야 하고 물이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 도살되기 전까지 기다리는 시간과 동물 종에 따라 특정한 규정이 존재한다. 서로 적대적인 동물들은 분리해서 구금해야 하며, 젖소는 도착한 날 도살되지 않으면 반드시 우유를 짜내야 한다. 만일 동물이 밤새 기다려야 한다면 하루에 두 번 상태를 검사해야 한다. 동물들을 따뜻하게 다루어야 하며, 만일 동물들이 탈출하려고 한다면, 헨들링 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전기침의 사용은 절대적으로 최소한에 제한되어야 한다.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여야 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건축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기절시키는 방법도 동물에 따라 다르다. 말은 머리에 놀이쇠나 총 한방으로 기절을 시킬 수 있고, 소는 머리에 놀이쇠나 총 한방 또는 공기소총을 사용할 수 있고, 돼지, 양, 토끼, 염소들은 머리에 놀이쇠나 총 한방 또는 전기에 의해 기절시킬 수 있다. 돼지는 추가적으로 이산화탄소 가스나 고압 물제트에 의해 기절할 수 있고, 토끼를 기절시키는 방법에는 머리를 강하게 치는 것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가금류는 머리에 놀이쇠나 강한 일격 또는 전기에 의해서 기절시킬 수 있다.

가금류와 토끼를 제외하고 동물들이 똑바로 선 상태에서 기절시켜야 한다. 주요 동맥을 절단하거나 구멍을 뚫음으로써 출혈이 일어나고, 가능한 한 빨리 기절한 후에 출혈이 일어나야 한다.¹⁰⁵⁾

105) Paige M. Tomaselli, International Comparative Animal Cruelty Laws, Michigan State University-Detroit College of Law 2003, <http://>

<유럽과 미국에서의 농장동물복지와 관련된 중요사건의 연대표¹⁰⁶⁾>

연 도	유 럽	미 국
1873		28시간법 논의 (28-Hour Law)
1906		28시간법 제정
1950	덴마크 동물보호법이 농장동물을 포함/뱃터리 사육금지	
1958		인도적 도살법 (Humane Slaughter Act)
1964	루드 해리슨의 동물기계(Animal Machines)	
1965	농장동물복지에 대한 브람벨보고서(brambell report)	
1967	영국 MAFF에 의해 농장동물복지자문위원회 설립	
1968	영국이 가축우리와 취급의 실제에 대한 권고조문 통과 (recommending codes of practice for housing and management of livestock)	
1969	동물운송에 관한 유럽협정회의	
1971	스웨덴- 법이 동물보호를 강조한 법개정의 승인을 요구 가금류 도살에 관한 유럽연합지침 (EU Directive on Poultry Slaughter)	
1972	서독-동물보호법	
1974	농장동물보호를 위한 유럽협정회의	
1977	동물운송에 관한 유럽지침	
1978	스위스 동물복지법-미래의 일정시점에 있어서 돼지를 구속하고 뱃터리에서 닭을 사육하는 것을 금지	1978년 인도적 방법 에 의한 도살법 (Humane Method of Slaughter Act)
1979	도살에 있어서 동물보호에 관한 유럽협정회의 도살에 관한 유럽연합지침 독일 동물보호법에서 뱃터리사육을 확대로 표현 덴마크에서는 배터리사육금지에 항의함	
1980		Jim Masen과 Peter Singer의 동물공장 (Animal Factories)출판
1986	서독 동물보호법개정 산란계(laying hens)에 대한 유럽지침 스웨덴이 항생제의 반치료적 사용금지	
1987	네덜란드 동물건강법 개정	
1988	스웨덴 동물복지법-돼지의 감금과 목줄매기는 1994년부터 닭의 뱃터리사육은 1999년부터 무효로 선언	
1990	달걀과 가금류를 위한 시장기준에 대한 유럽연합규정	
1997	암스테르담의 동물복지조약을 개정: 동물은 이제 감각력있는 존재(sentient beings)로 인식	

animallaw.info/articles/ddusicacl.htm.

106) Rowan, Andrew N., *Farm Animal Welfare(1999)*, pp. 7~9 참조 재구성.

제 3 절 실험동물관련법제

실험동물(laboraty animal)이란 검정, 진단, 교육, 연구 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 개량되어 사용되는 동물을 말한다. 이러한 실험동물은 인간을 대신하여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자극에 대하여 일정한 반응을 나타내는 도량형(biomeasures) 역할을 하는 “살아있는 시약”으로 불리며 생명과학 연구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되는 동물이다.

동물실험의 기본원칙은 모든 연구에 사용되는 동물은 좋은 관리 및 인도적 취급을 보증해야 된다. 대체할 수 없는 동물실험법이 없을 경우에 동물실험을 하며,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해야 하고, 모든 연구가 과학적으로 인정되는 결과를 얻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실험동물의 복지 뿐 아니라 동물실험 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실험동물의 복지라 함은 주로 3R로 표현되는데, 실험동물 이외의 방법으로 대체(Replacement), 실험동물 숫자의 감축(Reduction), 고통의 경감(Refinement)가 바로 그것이다.¹⁰⁷⁾ 각국에서는 이러한 동물복지차원에서 동물실험이 이루어질 것을 법제화하고 있는데,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미 국

미국은 실험동물과 관련하여 동물복지법(7USC2131-2157)과 보건연구법(Health Research Act, 42 USC 289d, 개정 1985)을 적용하고 있다.¹⁰⁸⁾ 동물보호법은 농무성이 주관하고 연구자금에 관계없이 모든

107) Russell 과 Burch가 제창함. <http://eanimal.snu.ac.kr/aboutus/history/4.htm>.

108) 1960년대에는 후에 연구용으로 팔린 가축의 유괴와 동물들을 연구 기관에 팔았던 개 상인들이 이 동물들을 가둔 상태에 관한 생생한 언론 보도로 인해 대중들은 애완동물들이 유괴되어 연구용으로 팔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의회는 1966년의 실험용동물 복지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이러한 관심에 부응했다. 그 법은 주로 동물 공급자에게 면허를 주고 규제를 하는 것이었지만, 연구에 이용된 동물들의 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는 동물 연구에 대한 좀더 실질적인 관심이 사회 전체에 퍼졌다.

관련부서를 포함하지만, 보건연구법은 보건관련업무에 사용되는 동물의 규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때 동물의 범위는 살아있는 척추동물로서 연구, 교육, 실험, 생물학적 검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PHS(Public Health Service)의 지원이나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은 반드시 이 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실험동물의 사용과 보관을 위한 지침(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1985, NRC)도 준수하여야 한다.¹⁰⁹⁾

(1) 동물복지법

1) 연 혁

애완동물을 함쳐서 실험실동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항의로 제정된 미국 동물복지법은 동물의 실험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제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1976년과 1985년 사이에 동물 실험에 대한 규제의 전체 구조가 아주 극명하게 바뀌어, 연방의 지원을 받은 연구시설들이 심각한 동물 남용에 연루되어 있음이 여러 사건에서 입증되자, 의회는 1981년에 청문회를 개최하였고, 그 후 1982년에 연구시설인가요건을 강화하고, 동물에 관한 프로젝트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동물보호위원회를 창설하고, 기대했던 과학 지식이 동물의 고통 이상의 것 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의 “가치 심사”를 요구하고, 살아있는 동물의 사용에 대한 대안을 고안해낼 것을 요구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¹¹⁰⁾

109) 공공 보건 서비스 기금을 받고 있는 모든 기관은 이러한 기준들을 따라야 하며, 모든 의료연구기관의 66%가 환자의 보건과 연결되어 있다.

110) 연구 단체는 그 입법을 반대했다. NIH 대표였던 William Raub은 “현재 법상의 권한과 이미 실행중인 행정적 체계는 그것들이 완전히 이용된다면 충분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는 또한 NIH는 “USDA에 기초한 현행 체계가 그 법이 적절히 준수되고 있음을 보증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타당하다고 믿는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에 USDA는 동의했다. 그 법안이 결국 법이 되지는 못했지만 AWA 개정에 대한 압력은 증가되었다. 그 결과 현재 연구자들에게 동물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실험에 진통제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Dole과 Brown의 후원을 받아서 Dole-Brown 개정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1985년의 식품안전법의 부분으로서 통과되었다.

이 법의 전문에서는 동물의 사용은 지식과 치료법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 살아 있는 동물들에 대한 대안이 개발되고 있고, 이러한 대안들은 동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점, 불필요한 실험의 복제를 방지하는 것이 연방의 예산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점, 그리고 동물 복지를 증진시키는 조치들이 동물에 대한 대중의 관심에 의하여 연구의 발전에 필요하다는 점을 적시했다.¹¹¹⁾

2) 내 용

① 동물의 보호와 이용위원회(IACUC)의 설치

동물실험을 하는 연방 시설을 포함한 각 연구 시설이 적어도 한개의 제도적 동물보호와 이용위원회(IACUC)를 두어야 한다. 위원회는 각 연구 시설의 실무장에 의해 임명되고,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적어도 한명은 수의사여야 하고, 또 한 명은 그 시설과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아야 하고, 그 시설과 관련있는 사람의 직계 가족이 아니며, 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처우에 대한 일반적인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실험 연구에서 그 시설의 필요에 의해 결정된 동물 보호, 처우와 관행을 평가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143(b) (1)).

위원회는 적어도 6개월마다 한번씩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관행과 동물이 처해있는 상황이 동물복지법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동물 연구 지역과 시설을 검사할 의무가 있다. 이를 토대로, 부정적 견해도 담은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그 보고서는 그 시설에 적어도 3년 동안 연방농무성이나 다른 연방 지원 기관의 조사를 위해서 보관되어야 한다 (§2143(b) (3)).

② 실험동물의 처우

농무부장관이 “동물의 인도적 취급, 보호 또는 처우”를 규율하고, “동물의 운동과 영장류의 심리화적인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적합한 물리적 환경

111) Gary L. Francione, *supra*, p. 190~198.

을 위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공표한다. 또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실험 절차에서 동물의 보호, 처우와 관행에 대한” 기준을 발전시킬 것을 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마취제, 무통약, 진정제를 적절히 사용하거나 안락사를 통해서 적절한 수의학적 치료를 할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요건의 일부분으로서 장관은 또한 실험자가 실험용 동물에게 고통을 유발시킬 것 같은 절차들에 대한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기준을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 그 기준은 고통스러운 절차의 계획, 사전, 사후의 외과적 치료와 마취제 없이 마취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있어서 수의사와 상담해야한다는 요건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그 기준은 진정제, 마취제, 무통약 또는 안락사의 보류는 과학적으로 필요할 때에만 이루어져야 하고, 필요한 기간 동안만 지속되어야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생존을 위한 수술(survival surgery)은 과학적으로 필요하거나 장관이 결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단 한번으로 제한되어 있다.

③ 교육 및 정보제공

국립의학도서관과 연계하여 국립농업도서관에서 정보검색 서비스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립농업도서관은 직원 훈련, 의도하지 않는 실험의 복제, 그리고 동물 사용과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실험 방법의 개선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연구시설들은 동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인도적 동물 유지와 실험, 사용되는 동물의 수를 줄이거나 동물에게 발생하는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연구나 실험 방법, 국립농업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 검색 서비스의 이용, 부족한 점을 보고하는 절차에 관해서 교육해야 한다.

④ 국가의 감독 및 제재

각 연구 시설은 적어도 1년에 한번씩 실제 연구나 실험에서 동물의 보호, 처우와 사용을 규율하는 전문적으로 허용 가능한 기준을 준수하고 조사하고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그 시설은 동물에게 고통을 유

발할 것 같은 절차에 대한 정보와 실험자가 대안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확증, 그 시설이 그 법이 규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 그리고 그 기준으로부터 벗어난 것에 대한 설명 등을 해야 한다.

미국연방농무성은 적어도 1년에 한번은 각 연구 시설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그러한 기준으로부터 부족한 점이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추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연구지원기관이 연구시설이 특정실험과 관련하여 법에 정해진 요건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그에게 통지와 교정 기회를 제공한 후에 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2) 보건연구연장법

보건연구연장법(Health Research Extension Act of 1985)¹¹²⁾은 미국국립위생연구소(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가 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이용에 관한 지침을 법으로 만든 것이다.¹¹³⁾ 법을 위반하게 되면 그 기관에 들어간 모든 연방 기금을 압수할 수 있게 된다. 그 두 개 법 사이에 미국에서 연구에 사용된 모든 척추동물들은, 농업 연구에 사용된 농장 동물과 사기업 연구에 사용된 쥐를 제외하고 현재 법적으로 규율 대상이다. 많은 동물보호 및 사용위원회들은 생의학 연구에 이용된 동물에게 적용했던 것과 같은 기준들을 고통과 통증에 직면해있는 농업 연구자들에게 적용한다.¹¹⁴⁾

2. 독일

독일 동물보호법 제5장에서는 동물실험에 관하여 제7조부터 제9a조까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112) Public Law 99-158, November 20, 1985, "Animals in Research".

113) 미국국립위생연구소는 오랫동안 동물 보호에 관한 합리적인 지침을 수립해왔지만, 그것을 강제할만한 제도를 갖지 못했었다. 원문은 <http://grants.nih.gov/grants/olaw/references/phspol.htm> 참조.

114) M. Bekoff, Encyclopedia of Animal Rights and Animal Welfare, Greenwood Press, 1998, p. 228.

우선, 동물실험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첫째, 질병, 질환 및 신체상해 또는 신체적 장애의 예방, 진단 또는 처치 또는 인간 및 동물에 있어서의 심리적 상태 및 기능에 대한 이해 및 영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둘째, 환경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셋째, 원료 또는 생산물의 인간 및 동물의 건강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실험 또는 동물적 침해에 대한 효과와 관련된 실험인 경우, 넷째 기초연구에 필요한 경우에만 동물실험이 시행될 수 있다(법 제7조 제2항). 그렇다 하더라도 척추동물에게는 그 실험에서 기대되는 고통, 질환 또는 상해가 실험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윤리적으로 수용될 경우만 가능하다(제3항). 무기, 탄약 또는 그에 속하는 기구의 발전 및 시험을 위하거나, 염연초생산물, 세탁제 및 화장품류의 발전을 위한 동물실험은 금지된다. 다만, 후자의 경우 구체적인 건강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및 필수적인 새로운 이해가 다른 방법으로는 얻어질 수 없거나, 유럽공동체의 법규를 시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관련부처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법규명령을 통하여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제5항).

이렇게 동물실험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물실험은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서만 수행되며, 실험이 불가피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온혈 동물에 대한 실험은 감각생리학적으로 발전이 덜 된 동물에 대한 실험으로는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수행되어지며, 필요이상으로 동물의 수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고통, 질환 또는 상해가 동물들에게 실험을 통한 목적달성에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만 가해져야 한다. 척추동물에 대한 실험은 마취상태에서 행해져야 한다. 동물실험으로 인해 실험동물이 사망하는 것이 인지되거나, 고통과 질환 속에서만 계속 생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살처분을 해야 한다(제9조 2항).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기 위해서는 실험계획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인가를 얻도록 함으로써 동물실험이 필수적인지, 사용되는 동물의 복지상태는 어떠한지에 대한 각종 요건을 구비했는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그 밖의 동물¹¹⁵⁾에 대한 실험은 실험개시

115) 인가를 요하지 않는 척추동물, 오징어나 문어같은 두족류 또는 게나 새우와 같은

2주전까지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제8a조).

동물실험이 이루어진 후에는 실험의 이유, 사용되어지는 동물의 명칭 및 수 그리고 실험의 종류 및 실행자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척추동물이 사용될 경우, 사용된 동물의 특징도 같이 기록해야 하며, 기록은 실험계획이 수행된 후 3년 동안 보관하며 관할 행정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제9a조).

3. 스위스

스위스 동물보호법은 제12조에서 동물실험의 정의로서 학술적인 가정을 시험하거나 정보를 얻거나 시약재료를 얻거나 특정조치가 동물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확인하거나 동물사용을 실험적인 행동연구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있는 동물을 사용하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제13조에서는 고통, 질환, 상해를 가져오거나 극심한 공포를 조장하는 동물실험은 수인할 수 없는 정도로까지 허용해서는 안 되고, 특정한 실험목적(예를 들어 화장품실험)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동물보호법시행규칙에서는 3R원칙을 규정하여, 다른 절차로 동물실험을 대신할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한 개체수만큼, 고등동물보다는 하등동물을 실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제14조와 제16조에서는 실험실의 대표가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며, 실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 마취상태에서 실험하고, 실험 후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안락사 시킬 것, 한번 실험한 동물을 다시 실험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17조는 이 실험기록은 3년간 보관하며 감독기구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¹⁶⁾

국가는 동물실험의 대체방법의 국제적 인식확산을 지원하고 장려한다(제19b조).

십각류.

116) Unser Tierschutzgesetz-kurz kommentiert.

제 4 절 반려동물관련법제

1. 미 국

미국의 연방동물복지법은 야생동물, 이국적인 동물의 판매와 전시 그리고 반려동물의 도매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반려동물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갖고 있지 못하다. 다만, 반려동물이 유기되었을 경우, 그 소유자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공립 또는 사설보호소가 개나 고양이를 면허를 받은 거래상에게 팔기 전에 적어도 5일간 그 동물을 보유하고 보살펴야 한다.¹¹⁷⁾ 그 기간동안 개와 고양이들은 원래 주인들에게 다시 돌아가거나 입양될 수 있다(§2158 (a) (1)). 임의로 얻은 개나 고양이를 팔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상으로 제공하기 전에 상인은 수령자에게 그 자신과 동물, 동물을 얻은 장소, 획득 일자에 대한 정보와 기다리는 기간 동안 있었던 보호소의 확인서를 포함한 유효한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2158 (b) (2)). 연구시설은 1년 동안 이 증명서 원본을 보관해야 하고, 상인도 1년 동안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2158(b) (3)). 그 증명서는 동물의 제공자가 그 개나 고양이가 연구나 교육 목적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확인을 포함해야 한다. 만일 제공자가 유치소나 보호소라면 상인이 그 동물이 연구에 이용될 것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2158(b) (2) (D)).

이는 오히려 지방(주나 시)의 반학대법, 지방동물규정 또는 공공건강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¹¹⁸⁾ 각 주법에서 동물관련법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 오레건 주의 예를 들면, ORS Chapter 609(동물통제; 이국적인 동물들; 판매업자)에서 개, 이국적인 동물들, 동물을 안락사 시키는 것, 동물판매상, 잡칙,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중 개의 등록 및

117) 만일 동물이 공립보호소로부터 왔다면, 상인은 동물을 팔기 전에 적어도 만 5일 동안 그 동물을 보관해야 한다. 만일 그 동물이 사설 또는 계약 보호소에서 온 것이라면, 그는 적어도 10일간 그 동물을 보호해야만 한다. 이것은 연구자들에게 팔리기 전에 공립 유치소로부터 온 동물들은 적어도 총 10일간(보호소에서 5일, 상인에게서 5일) 보관되어야 하며, 사설보호소에서 온 동물은 적어도 총 15일간(보호소에서 5일, 상인에게서 10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18) <http://www.nal.usdgv/awic/companionanimals/faq.htm>.

마이크로칩, 위험한 개의 판단기준, 개의 공공장소에서의 자유로운 활보 금지,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경우들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위반에 대하여는 경범죄로서 250달러에서부터 500달러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의 통제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있다.¹¹⁹⁾

그밖에도 소비자를 악질의 판매자로부터 어떻게 보호해야하는가와 관련하여 반려견보호법(Puppy Protection Act)이 1992년 연방의회에 제출되었으나 보류되었고¹²⁰⁾, 현재에는 각주가 제정하는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 등에서 애완동물의 매매에 관한 조항을 만들어 악질판매자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¹²¹⁾

2. 독 일

애완동물관련법으로는 동물보호법 제2조를 개의 보유와 관련하여 구체화한 2001년 5월 2일에 개정되고 동년 9월 1일부터 발효된 개에 관한 동물보호명령(Tierschutz-Hundeverordnung)¹²²⁾과 위험한 개의 퇴치를 위한 법률(Gesetz zur Bekämpfung gefährlicher Hunde)을 들 수 있다.

개에 관한 동물보호명령은 동물보호의 측면에서 모든 개에게 적용되며, 동물이 머물 장소의 필요, 사료 및 보살핌, 귀나 꼬리를 자른 개의 전시, 한 사람이 기를 수 있는 개의 마리수 제한, 사육자의 지식과 능력에 대한 요구조건들 및 특별히 공격적인 개의 품종¹²³⁾간의 교배 및 사육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119) Oregon 주의 Douglas County에서는 Teile 6에서 개통제, 위험한 개, 동물보호소 등을 규정하고 있고, Clackamas County에서는 Teile 5 Animal, 5.01 개의 허가 및 통제부분에서 목적, 정의, 허가, 개의 통제, 감금, 무는 개, 벌칙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http://www.co.clackamas.or.us/dc/laws.htm>).

120) 법률안은 원래가 애완동물판매점이나 상업시설을 목표로 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로써 취미인 사육자에게 충격을 주게 되어 폐안이 되었다.

121) 長谷川貞之, 『アメリカのペット法事情』, 『法律時報』 73卷 4号, 11~12면; Tracy Vogel, Staff Writer, 『Pet Lemon Laws』 <http://www.vetcentric.com/magazine/magazineArticle.cfm?ArticleID=1380>.

122) BGBI I S. 838~841(2001), Hirt/ Maisack/ Moritz, Tierschutzgesetz Kommentar, Einführung, RN. 6.

123) 핏볼테리어, 볼테리어, 스탠포츠쉐어-볼테리어, 어메리칸-스탠포드쉐어-테리안

위험한 개-투견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들은 공적 안전과 질서를 위해 서 동물보호법이 아니라 경찰·질서법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데, 연방 행정부는 2001년 4월 12일 위험한 개의 퇴치를 위한 법률(BGBI. I S. 530)을 통해 이러한 보완장치를 추가하였다.¹²⁴⁾

주법에서는 개에 관한 동물보호명령을 구체화하여 각 주는 위험한 개의 보유에 관하여 구체화된 개보유법(Gesetz zur Halten von Hunde, Hundehaltungsverordnung)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개 등록세 등을 정한 지방세법관련조례(Hundesteuersatzung), 공공장소에서 개를 데리고 다닐 경우의 수칙 등을 공원관리조례, 놀이터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¹²⁵⁾

3. 스위스

원칙적으로 동물보호법 제3조는 동물보유자가 동물을 다룰 때 잘 먹이고 기거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필수적인 운동을 시켜주어야 한다. 최저사육기준은 이해관계인들의 청문을 거쳐 연방상원에서 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4조에서는 특별한 중, 특히 공격성이 강한 개를 사육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허가하고 있다고 명시하였다. 동물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동물의 생명이나 복지의 보호를 위해 요구조건을 충족한 자에게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다(제7조).

124) BT Drucksache 15/723, S. 35.

125) 자세한 내용은 김수진, 애완동물관리에 관한 법적 문제, 한국법제연구원 2003 참조.

제 4 장 우리 나라의 동물관련법제

우리 나라의 동물관련법제의 기본법이 되어야 할 동물보호법은 1991년에 제정되었다.¹²⁶⁾ 이 법은 목적, 정의, 동물보호, 동물보호운동, 적절한 사육·관리, 동물학대금지, 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 동물의 도살방법, 동물의 실험, 적용의 제한, 벌칙조항, 총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간략하고 선언 내지 권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동물학대를 한 자에게 최고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실효성의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보호법의 개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농림부는 1999년과 2002년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러나 매번 이해집단간의 의견차가 심하여 개정에 이르지 못했고, 2004년 현재도 농림부는 다시 2005년 법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현행 동물보호법과 기존의 동물보호법개정안의 내용을 중요 쟁점별로 도표화하여 비교해보겠다. 또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2002년 생명체학대방지포럼안(이하 동물단체안으로 통일함)과 2004동물보호법추진위원회안¹²⁷⁾의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 1 절 동물보호법의 개정논의

1. 동물보호법의 목적, 대상 및 보호의무

(1) 동물보호법의 목적

동물보호법 제1조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126) 동물보호단체들은 1991년의 동물보호법조차도 지난 십여년간 국제행사를 앞두고 이를 의식한 정부의 반응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동물보호법의 내용이 되어야 할 핵심적인 개념과 기반이 없어 실효성없는 법, 정당성없는 법, 외국의 항의만 잠재우려는 비겁한 법 등의 부끄러운 꼬리말을 달고 지난 10년간 존속해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http://www.kaap.or.kr> 게시판.

127) 동물보호법추진위원회(동보위)를 구성하여 작성한 2004 동물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농림부에 제출한 내용으로, 동물사랑실천협회, 동물학대방지연합, 아토피,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 (사)한국동물복지협회가 참여했다. 이는 동물보호연합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여,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동물보호법의 대상

1) 현행법

동물보호법 제2조는 동물의 개념으로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양·사슴·여우·밍크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로 열거하고 있다. 개별법령에서 동물 또는 가축이라는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은 “동물”의 종류를 열거하며,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내지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가축”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그 열거된 종류는 대동소이하다(표 참조).

< 현행 동물관련법에서 규정한 동물의 정의 >

관계법령	동물(가축)의 범위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	“동물”이라 함은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양·사슴·여우·밍크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수의사법 제2조 제2호	“동물”이라 함은 소·말·돼지·양·개·토끼·고양이·가금·꿀벌·어패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수의사법시행령 제2조	수의사법 제2조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동물을 말한다. 1. 노새·당나귀 2. 사육하는 친칠라·밍크·사슴·메추리·꿩·비둘기 3. 사육하는 시험용 동물 4. 기타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동물로서 사육하는 포유류·조류·파충류 및 양서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호	“가축”이라 함은 소·말·당나귀·노새·면양·산양·칠면조·오리·거위·돼지·개·닭·꿀벌·사슴·토끼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p>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2조</p>	<p>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동물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양이 2. 타조 3. 그 밖의 사육하는 동물 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p>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호</p>	<p>“가축”이라 함은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닭·오리,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p>
<p>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조 제1항</p>	<p>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호에서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동물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꿩
<p>축산법 제2조 제1호</p>	<p>“가축”이라 함은 사육하는 소·말·돼지·닭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가금을 말한다.</p>
<p>축산법시행규칙 제2조</p>	<p>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가금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동물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새·당나귀·토끼·개 및 사슴 2. 오리·거위·칠면조 및 메추리 3. 꿀벌 4. 기타 야생습성이 순화되어 사육하기에 적합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짐승·가금 및 관상용 조류
<p>농림부고시 제2004-5호</p>	<p>짐승(오소리, 뉴트리아), 가금(타조, 꿩), 관상용 조류(십자매, 금화조, 문조, 호금조, 금정조, 소문조, 남양청홍조, 붉은머리청홍조, 카나리아, 앵무, 비둘기, 금계, 은계, 백한, 공작) 및 기타 지렁이(총 36종)</p>
<p>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p>	<p>“야생조수”라 함은 산이나 들 또는 물위에서 사는 새와 젖먹이 동물(수입된 것을 포함한다) 중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p>

2) 동물보호단체의 개정안

현행법에 열거된 동물의 정의는 매우 좁다. 주로 외국의 경우는 모든 동물, 또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척추동물 혹은 온혈동물을 특히 그 대상으로 하고, 그 외의 동물에 대해서도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확장시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동물보호단체는 동물의 개념과 유형별 동물을 정의규정에 명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002년 동물단체안	2004년 동물보호법추진위원회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이란 함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것으로서 가축, 과학적 이용대상, 개, 고양이를 포함한 반려동물등을 총칭하는 모든 척추동물 및 기타 유기체를 말한다. 2. 가축이란 함은 모피, 가죽, 고기, 젓, 꿀, 알 등의 가공품과 기타 사업용품을 위해 사육, 번식되도록 허가된 동물들을 말한다. 3. 과학적 이용대상으로서의 동물이란 교육, 시험, 연구 및 생물학적 제재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척추동물과 두족류 무척추동물을 말한다. 4. 반려동물이란 개, 고양이 등 인간과 감성적, 일상적 유대관계를 나누는 동물 혹은, 이를 위해 사육·번식되는 동물로서, 특히 인간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물을 말하며, 장단기 유기동물과 그 새끼 그리고, 안내, 경비 등의 인간과 함께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들을 망라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이란 함은 소, 말, 돼지, 개, 고양이, 토끼, 닭, 오리, 산양, 면양, 사슴, 오소리, 새 등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모든 척추동물과 기타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좌 동 3. 실험동물이란 함은 교육, 실험, 연구 및 생물학적 제재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척추동물과 두족류 무척추동물을 말한다. 4. 반려동물이란 함은 개와 고양이를 말하며 다른 동물의 경우 인간의 정서함양과 동반의 유대관계를 나누는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의 의무와 일반인의 동물학대금지

동물의 보호는 주체에 따라 달리 설정된다. 동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의 동물보호의무와 누구든지 동물에게 학대를 해서는 안 되는 의무, 즉 학대금지의무로 나뉘어진다.

1) 동물소유자 혹은 관리자의 동물보호의무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동물보호법 제5조 제1항),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항). 또한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야생동물을 관리하거나 동물을 다른 동물우리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항).

2) 일반인의 동물학대금지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고통, 상해를 주는 행위를 학대로 보고 있으며, 2002년 개정안에서는 학대의 유형을 열거하였다.

현행동물보호법	1999년 농림부개정안	2002년 농림부개정안
<p>제 6 조(동물학대의 금지)</p> <p>①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된다.</p> <p>②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p>	<p>제 7 조(동물학대 등의 금지)</p> <p>누구든지 동물에게 장시간 고통을 주면서 죽이거나, 동물의 장기를 훼손하는 등 사회통념에 반하여 동물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동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p>제 6 조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2. 산채로 불에 태우거나 끓는 물에 넣어서 죽이는 행위 3. 목을 매거나 때려서 죽이는 행위 4. 함께 기르는 동물이 있는 곳에서 죽이는 행위 <p>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동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을 굶주리게 고의로 사료와 물을 주지 않는 행위 2. 때리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이와 관련하여 현행 동물보호법은 제11조에서 동물학대금지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는 예외조항을 상정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있어 동물이 인간의 도구로서의 성격이 강조되는 경우, 즉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식용목적으로 도살되는 동물, 수렵의 대상, 모피를 공업용 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되는 동물, 약용 또는 공업용 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물의 뿔·피 등을 채취하는 경우와 둘째로,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기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농림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그 밖에 전통소싸움 경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소싸움에 관하여는 이러한 동물학대금지조항의 적용과 그에 따른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농림부는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행위의 범위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대행위의 내용을 동물보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투견·경견 등도 학대행위에 포함하는 등 그 범위를 확대하려고 한다.¹²⁸⁾

3) 동물보호단체의 개정안

동물보호단체는 우선 정의규정에서 학대의 개념을 정의할 것을 제안했다.

2002년 동물단체안	2004년 동물보호법추진위원회안
학대란 동물에게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을 겪게 하거나, 고통을 겪고 있음이 인지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적절한 처방을 주지 않는 태만행위를 말한다.	학대라 함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불필요하고 피할 수 있는 물리적 고통이나 심적 고통을 가한 것이 명백하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및 동물이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적절한 조치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행위

또한 학대의 유형을 열거하였다.

128) 농림부뉴스, “동물보호 종합대책 마련, 『동물보호법』 개정키로”, 2004년 10월 6일 게시.

2002년 동물단체안	2004년 동물보호법추진위원회안
<p>제 5 조(학대의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 목적·동물의 복지와 관리·공공의 안전과 복지 목적 이외에 동물의 외형을 고치는 단미, 단이, 성대 수술, 단치 등의 외과적 수술의 금지되며, 모든 외과적 수술은 치료목적·동물의 복지와 관리·공공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자격을 가진 수의사에 의해 행해지며 심한 고통을 야기하는 수술은 수의사 혹은 수의사의 감독 하에 마취 후 행해져야 함. * 동물의 건강과 본성 복지를 해하는 훈련은 금지되며, 번식·사육·훈련·거래 등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인공 기구 및 약물을 사용하여 동물의 해부적·생리적·행동적 특성을 해해서는 안된다. * 동물의 공격성을 인위적으로 자극시키거나, 사회적 윤리에 위배되는 도박, 경매, 싸움을 목적으로 하는 사육·번식·훈련·취득·거래·이전은 금지되며 생명경시를 조장하는 모든 생명체의 상업적 이용 및 상업적·비상업적 경품, 도박, 오락은 금지된다. * 직간접적 도박, 유흥, 사업, 광고 등을 위해 동물간, 동물과 인간간의 싸움을 조장하는 상업적·비상업적 행위 * 동물을 경품으로 주거나 책임있는 소유권을 도모하지 않는 증여와 선물은 금지됨 * 군견, 경찰견, 안내견, 인명구조견, 경비견, 경주 동물, 공연 동물 등 인간의 생활과 업무에 이용되는 동물들은 종사 기간 중 이 법이 정하는 학대 및 태만금지의 대상이 됨. 종사기간 후 실험실습용으로 기부됨이 금지되며, 수의사에 의한 인도적인 안락사이외의 도살은 금지 	<p>제 6 조 금지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의 보호와 관리, 치료, 공공의 안전 이외의 목적으로 동물의 신체 및 장기를 훼손하는 외과적 수술(단미, 단이, 이빨제거, 발톱을 뽑는 행위 등) * 동물의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 및 경기를 조장하는 행위와 과도한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 *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유흥, 약재 또는 약품 등을 넣어서 사육·번식하는 행위 * 번식, 사육, 훈련 및 거래에 있어서 불필요한 인공 기구 및 약물을 사용하여 동물의 신체를 해하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 오락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가재나 햄스터, 병아리 등 기타 곤충을 죽이거나 상하게 하는 가재 뽑기, 햄스터 뽑기, 병아리 염색판매 등 이러한 일체의 오락, 영리행위 * 동물을 도박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유흥, 광고, 영리 등의 목적으로 동물간의 또는 동물과 사람과의 싸움을 조장하는 행위 * 동물을 경품으로 주거나 노상에서 판매하는 행위 등 허가된 장소이외에서 동물을 진열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식용이나 보신용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 *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2. 국가의 역할

(1) 국가의 계획수립, 지원 및 처벌방안

현행 동물보호법은 국가가 동물보호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두고, 국가가 직접적으로 동물보호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거나 그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현행 동물보호법이 동물학대를 한 경우 최고 20만원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낮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부는 2005년 개정안에서 6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동물 학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간이 참여하는 동물보호감시관제도를 도입·운영하기로 하였다.

현행 동물보호법	1999년/2002년 개정안
제 4 조(동물보호운동) 정부는 이에 대해 농림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물보호활동을 권장하고,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행하는 동물보호운동 기타 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4 조(동물보호시책의 강구) ①농림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동물보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민간단체가 행하는 동물보호운동 및 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동물보호단체의 개정안

1) 국가의 계획수립 및 사업비지원

2002년 동물단체안	2004년 동물보호법추진위원회안
제 4 조(동물보호활동) ①농림부장관, 서울특별시,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유기동물보호소제도 및 동물윤리위원회 구성을 포함하여 동물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제 4 조 국가 등의 책무(동물보호활동) * 농림부장관이 매 5년내지 10년마다 동물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자치단체장은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p>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책을 수립, 추진, 지원해야 한다.</p>	<p>* 농림부장관은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행하는 동물보호활동 및 기타 이와 관련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나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보조가능</p>
---	---

(3) 동물보호감시관제도의 도입

동물보호단체는 동물에게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겪게 하거나 겪도록 방기하는 경우에 이를 조사하고 집행할 동물복지감시관제도의 도입을 요구한다.

2002년 동물단체안	2004년 동물보호법추진위원회안
<p>제 9 조(동물보호감시관) ①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는 보호감독관을 지정해야 하며 보호감독관은 민간동물보호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동물보호감시원 및 유기동물 수집 대행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②동물보호감독관 및 감시원은 동물보호법 및 기타 동물보호관련 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동물경연, 도살, 안락사, 번식, 사육, 거래, 훈련, 과학적 연구를 하는 시설 및 장소에 출입권을 가지며 이를 거절, 회피, 방해함은 금지된다.</p> <p>③제2항의 업무수행을 할 때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필요하면 경찰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p> <p>④보호감독관 및 보호감시원은 학대현장의 동물을 현장에서 압수할 권한이 있다.</p> <p>⑤동물보호감독관 및 보호감시원은 신속히 동물을 구조, 접수, 공고, 보호, 입양 및 치료 및 안락사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p> <p>⑥동물보호감시활동은 현장의 접근 및 조사, 구조, 압수 및 피학대동물의 보호 전반에 있어서 민간동물보호단체의 조력을 얻을 수 있으며, 정보의 공유를 포함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의무가 있다.</p>	<p>제 5 조(동물보호감독관 및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동물보호감독관임명, 동물보호감시원임명</p> <p>유사내용</p> <p>* 농림부장관산하에 7인 이상의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 구성원은 정부관련기관 및 동물의 복지를 대변하는 전문가 및 시민으로 구성되며, 농림부장관이 임명한다. 단, 동물보호활동에 기여한 동물보호단체가 추천하는 인사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법의 개정과 시행에 대한 검토와 동물보호와 복지에 관련된 전반적인 조사 및 연구 기타 정부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하는 데 심의, 의결,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p>

제 2 절 농장동물관련법제

농업과 축산은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경제활동으로서, 인간이 존재하는 한, 언제나 농축산업은 존재해왔다. 우리에게 젓, 알, 고기, 털, 가죽 등을 선사해주는 농장동물도 동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동물보호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무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경제성을 앞세운 축산환경에서 과연 동물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동물보호법 제3조와 제5조에 따라 농장동물도 동물의 사육에 있어 가급적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어야 하며, 농장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될 것인지의 문제이다. 둘째 동물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동물보호법 제8조와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에서 특히 농장동물에 대해서 언급한 유일한 조항은 동물보호법 제11조 제1호의 관계이다. 이는 동법 제6조와의 관계에서 엄격히 해석해보자면, 식량으로 사용되기 위한 가축의 도살에 대해서는 동물을 합리적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더라도 동물학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셋째 동물의 수술을 규정한 제9조와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동물운송에 관한 내용이 농장동물관련법제를 살펴보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1. 농장동물의 사육

(1) 동물보호법상의 해당조문

동물보호법상 농장동물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제3조와 제5조에 따라 농장동물도 동물의 사육에 있어 가급적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어야 하며, 농장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어야 한다. 동물

보호법개정안에서는 농장동물에 관해 언급된 바 없다.

(2) 축산법의 해당조문

2002년 축산법개정에서 축산업의 대규모화와 밀집사육이 늘어남에 따라 농가의 가축질병예방과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화업, 계란집하업, 종축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¹²⁹⁾의 소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사육업에 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등록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제20조). 이 때 축산업의 등록기준으로 가축사육시설이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이거나 당해 가축사육시설에 환기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축산법시행령 별표 1)¹³⁰⁾. 또한 축산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3호에 의해 축산업등록자는 가축질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¹³¹⁾하는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이상으로 밀집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말아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는 시행일은 2007년 1월 1일부터이다.

① 한·육우¹³²⁾

(단위 : m²)

시설형태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방사식	10.0	7.0	2.5
계류식	5.0	5.0	2.5

129) 소사육업의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 양돈업의 경우는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 양계업의 경우는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일 경우에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축산법시행령 제11조의 3).

130) 2003년 12월 30일 신설.

131) 2004년 2월 14일에 고시(농림부 고시 제2004-8호).

132) 송아지(6개월령미만), 육성우(6~14개월령미만), 성우(14개월령이상) 나누어 육성우 두 마리를 성우 한 마리로 계산한다.

제 4 장 우리나라의 동물관련법제

② 젓 소

a.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 m²)

시설형태	경산우		초임우 (13~24개월령)	육성우 (7~12월령)	송아지 (3~6월령)
	착유우	건유우			
깔 짚	16.5 m ²	13.5	10.8	6.4	4.3
계 류 식	8.4	8.4	8.4	6.4	4.3
후리스틀	8.3	8.3	8.3	6.4	4.3

* 계류식 : 착유·건유우사는 **계류우사**, 나머지는 깔짚우사인 경우 포함 /
후리스틀 : 착유우사는 **후리스틀**, 나머지는 깔짚우사인 경우 포함

b. 일관사육시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 m²)

시설형태	깔 짚	계류식	후리스틀
두당평균면적	12.8	8.6	9.0

③ 돼 지

a.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 m²)

구 분	웅 돈	임신돈	분만돈	중부대기돈	후보돈	자 돈	육성돈	비육돈
두 당 소요면적	9.7	1.4	3.9	1.4(스틀) 3.1(군사)	3.1(군사)	0.3	0.6	0.9

b. 경영형태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 m²)

일관경영 번식-분만-자돈-비육	번식경영(1) 번식-분만	번식경영(2) 번식-분만-자돈	비육경영(1) 자돈-비육	비육경영(2)비육
0.89	2.51	0.93	0.72	0.87

④ 닭의 수당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¹³³⁾

계 종	시설형태	수당면적	비 고
산란계	케이지	0.042m ² /수	
	평 사	0.11m ² /수	
산란 육성계	케이지	0.025m ² /수	100일령까지 사육
육 계	케이지	0.0420.042m ² /수	
	평 사	무 창	0.042m ² /수
		개 방	0.042m ² /수

2007년부터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축산업등록자가 가축사육시설과 단위면적당 가축사육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축산법 제22조, 축산법시행규칙 제27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축산법 제47조 제1항 6호). 그리고 축산법의 규정은 아니지만,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의 2에 의하면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결과가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가축의 사육방법의 개선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¹³⁴⁾ 또한 정부는 농장에 대해서는 2006년 양돈을 시작으로 2007년에 젓소, 2008년에 한우, 2009년에는 산란계, 2010년에는 육계등을 대상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¹³⁵⁾의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자율실시하는 농가에 대해 정부가 인증할 계획이다.¹³⁶⁾

133) 육성계와 병아리는 성계로 환산하여 계산한다(성계 1수=육성계 2수=병아리 4수). 육계의 경우는 병아리는 3주령 미만, 육성계는 3~4주령 미만, 성계는 4주령 이상을 말하고, 산란계·종계의 경우는 병아리를 3주령 미만, 육성계를 3~18주령 미만, 성계를 18주령 이상으로 본다.

134) 2004년 1월 29일 신설.

135) 식육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가축의 사육, 도축, 가공,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축산물이 위해요인에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공정 과정별로 발생가능한 미생물 등 위해물을 사전분석하여 중점관리하는 예방제도로 우리나라에는 2000년에 도입됨.

136) 2003년 7월 이후 도축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였고, 사료공장은 2005년부터 자율시행후 07년부터 의무화하고, 축산물판매장은 05년부터, 보관·운반단계

(3) 동물보호단체의 개선안

2004년 동물보호법추진위원회안 제12조에서 처음으로 농장동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007년부터 적용될 사육시설의 최저기준을 넘어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닭, 오리 등을 사육함에 있어서 케이지 사육, 배터리 사육과 같은 밀폐되어진 철창 안에 동물을 넣고 기르는 것은 금지되며 동물 본래의 활동과 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자연 방사(放飼) 사육으로 대체하도록 하며¹³⁷⁾, 닭, 오리 등을 사육함에 있어서 알을 더 낳게 하기 위하여 잠을 재우지 않고 기르거나 강제털같이 등을 금지하도록 한다.

또한 관리자 등은 동물을 묶어 기르거나 좁은 우리에 가두어 길러서는 안되며 강제로 사료나 물 등을 먹여서는 안되고, 관리자 등은 단미(斷尾), 단이(斷耳), 치아절단, 부리 자르기, 코뿔기 등을 해서는 안되며 동물의 보건이나 복지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쓰도록 하며, 중성화 수술이나 단각, 낙인, 코뿔기 등은 반드시 수의사가 하여야 하며 마취를 한 후에 통증없이 시술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2. 농장동물의 운송

(1) 우리나라의 현황

현행 동물보호법 내지 다른 법에서도 동물의 이동에 대하여 규정한 바 없다. 다만 1999년 개정안에서 동물의 사육규정에 운송을 같이 도입하자고 입법예고한 바 있을 뿐이다. 동물보호법에 충실하게 해석한다면, 동물을 운송하는 자는 동물들이 곧 도살될 운명에 있다 하더라도 동물에게 적절한 식수, 사료, 용변, 공간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운송으로 인하여 동물이 죽거나 다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법제화되지는 않았으나, 식육관련산업을 담당하는 곳에서는 축산물의 품질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농장동물의 운송

에 대해서는 07년부터 임의제도로 도입키로 하였다(HACCP농림부 게시판 2004. 7.29 축산물위생·안전성 종합대책(파일이름:0729 축산물위생안전대책붙임(축산물위생).hwp).

137) 당장 시행이 어려우면 3~4년의 시한을 두고 시행 가능함.

은 축사에서 끌어내 차량의 적재로부터 도축장으로 이동하여 하차하고 수송 중에 받은 스트레스를 회복하기까지의 전과정을 말하는데, 수송하는 과정 중 운송기간, 운송거리, 운송중의 운전상태, 운송중의 기온 및 적재시 밀집상태 그리고 도로사정 등이 변수가 된다. 수송 중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하여 출하 전 가축을 8시간이상 절식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수송차량은 주로 트럭을 이용하며, 수송차량의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적재함의 면적은 두당 돼지 0.5㎡, 소 1.7㎡ 정도를 권장하며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5톤 트럭에 돼지를 35두 이상 적재하면 과밀 적재로 본다. 농장동물을 적재할 때 자유롭게 서거나 앉을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농장동물이 강제로 겹치거나 벽에 밀쳐지는 일이 없어야 하며, 외기 온도가 22도를 상회하면 적재면적을 10% 정도 늘려줄 것을 권고한다. 수송차량은 도로사정에 맞게 조심하여 운전하여 가축이 쏠리지 않게 해야 한다. 장거리 수송시에는 5~6시간마다 급수시켜야 하며, 축종, 성별 등을 구분하여 가능한 같은 무리끼리 승차 시키도록 한다.¹³⁸⁾

(2) 동물보호단체의 개선안

2002년 동물단체안	2004년 동물보호법추진위원회안
<p>제 8 조(동물의 운송) 동물을 운송하는 자는 운송되는 동물에게 적절한 식수 사료, 용변, 환기, 통풍, 일광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운송중의 동물은 운송으로 인한 충격과 고통과 상해를 입어서는 아니된다. 운송자와 책임자, 운송내용, 운송수단과 거리, 안전 시설의 요건과 함께 운송중인 동물에 대한 복지적인 배려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동물의 운송)</p> <p>①동물을 운송하는 자는 운송되는 동물에게 적절한 식수, 사료, 용변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 더위나 추위, 운반차량의 매연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운송도중에도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p> <p>②동물에게 적절한 공간이 주어져야 하며, 과밀하게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며, 동물이 정상적인 자세로 운송될 수 있어야 한다.</p> <p>③동물은 운송으로 인한 충격과 고통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병들거나, 상처가</p>

138) 기획특집 1. 도살 전 가축의 취급방법, 월간식육 2004년 5월.

	<p>나거나, 임신 중인 동물이나, 어미에게 딸린 새끼를 운반하는 경우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④운송하는 자는 급, 정차 등 난폭 운전을 금하며, 동물의 신고 내리는 과정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p> <p>⑤동물을 운송하는 컨테이너는 동물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고 상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컨테이너 내에 적절한 환기구를 설치하고 컨테이너가 이중으로 운송할 경우에도 적절하게 환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p> <p>⑥동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는 수출입에 이상의 요건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수출입하여 운송할 수 있다.</p> <p>⑦운송차량은 차의 전면과 뒷면에 '동물 운송차량'이라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p> <p>⑧기타 운송수단과 안전시설 및 동물 복지를 위한 운송에 대해서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	---

3. 인도적인 도살

(1) 동물보호법상의 해당조문

동물의 도살에 있어서 동물보호법은 제6조에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일 경우에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식용동물에 대해서는 제11조에서 그 적용의 배제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동물의 도살은 가능한 한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동물보호법 제8조도 함께 해석할 경우 혐오감을 주는 방법이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것을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인도적인 방법으로 도살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2년 농림부의 동물보호법개정안 제9조는 동물을 도살할 때 수의학적 방법으로 도살할 것과 개·고양이의 사체가 사체자체 또는 지육상태로 일반에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제안하였고, 제11조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살처분일 경우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일 경우에도 동물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으나 많은 비판을 받았다.¹³⁹⁾

(2)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¹⁴⁰⁾ 제7조 제1항은 가축을 도살할 경우는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하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¹⁴¹⁾ 도축장의 설비는 가축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생체검사장과 작업실 사이에는 가축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구획된 통로가 있어야 한다.¹⁴²⁾ 그 외의 법규정은 찾을 수 없고, 다만, 식육처리기능사시험¹⁴³⁾에서 좋은 품질의 고기를 얻기 위한 전제로서의 도축 문제를 다루고 있을 뿐이다. 좋은 품질¹⁴⁴⁾의 고기를 얻기 위해서는 가축이 살아있을 때 좋은 복지상태에 있어야하고, 도살 전 48시간 동안 얼마

139) 최근 조류독감이 발생했거나, 구제역 방역대책에 있어서 긴급한 경우라 할 지라도 동물보호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 [소각·매몰기준]에 따라 살처분이 이루어진 후 소각·매몰을 하여야 함에도 살처분 사실 확인 없이 매몰을 공공연하게 이를 살처분하지 않고 이동하여 산재로 매몰되는 장면이 TV에 여과없이 방영되었다. 이에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소장 박오순 변호사)과 생명체학대방지포럼(대표 박창길)이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제역 방역 대책 과정에서 ‘동물보호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구제역긴급행동지침’의 위반을 들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동물보호연합 홈페이지 게시판).

140) 가축의 도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축산물가공처리법 제1조).

141) 부상, 난산, 긴급탈장증 등으로 인해 가축을 즉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해 도살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한다.

142)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도축과 관련하여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143) 자격시험으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을 실시한다. 이는 식육도체의 구성과 등급, 신선육, 품질 및 저장, 가공육 생산기술 등 식육생산과 가공에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국가공인기능인으로서 10평이상의 정육점에는 식육처리기능사가 근무하여야 한다.

144) 이에 반대되는 나쁜 고기는 색깔이 옅고(pale) 흐물거리며(soft) 빨긴 물이 빠져 나와 흥건해진(exdative) 고기를 말한다. 스트레스로 인해 근육이 경직되고 단백질이 변성되는 등 몸의 생리현상이 급격히 변한데 있다. 예를 들어 도축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30분이하일 때 PSE 육 발생률은 29.5%인 데 비해 1시간 이상이면 40%에 달한다. 도살방법도 중요한 변수이다. 전기충격(18.5%)이나 이산화탄소가스(4%)를 이용하는 방법에 비해 이마를 때리는 타액법의 경우 43%의 PSE육이 발생했다. <http://www.donga.com/fbin/news?f=print&n=200403020238>.

나 스트레스를 받느냐가 관건이라는 주장이 있다. 스트레스는 동물이 유해한 자극에 대하여 생리적 및 생태적으로 반응하는 전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가축의 생리적 변화와 도살 후 근육의 생화학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권고한다. 돼지에게 적절한 전살작업은 돌기전극으로 150~200V 1.25A 전압을 정확하게 소뇌에 약 3~5초간 전기 충격을 주는 것으로 달성할 수 있다. 자동전살 장치로 기절시킨 후 방혈(피빼기)을 실시해야 한다. 도축시 방혈로 출혈사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¹⁴⁵⁾ 도살방법에는 타격법¹⁴⁶⁾, 전격법¹⁴⁷⁾, 충격법¹⁴⁸⁾, 가스마취법¹⁴⁹⁾ 등이 있다.

(3) 동물보호단체의 개선안

2002년 동물단체안	2004년 동물보호법추진위원회안
<p>제11조(안락사 및 도살)</p> <p>①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동물을 불가피하게 안락사하여야 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고통과 최단시간의 고통을 부여하도록 하는 원칙을 지키며 전문수의사가 최대한 고통없이 의식을 잃게 하는 작업 및 마취가 선행된 이후 안락사하도록 한다. 모든 안락사 기록은 동물의 등록사항에 기록되도록 한다.</p> <p>② 사체처리는 동물의 죽음이 확실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p> <p>③ 모든 도살은 최소시간의 최소한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라는 원칙을 지키도록 한다. 의식의 즉각적 상실 후 도살이 이루어져야 하며, 익사, 질식</p>	<p>제14조(안락사 및 도살)</p> <p>① 동물의 과학적 이용, 축산, 고통경감을 위한 목적, 공공의 안전, 전염병의 방지, 정부의 인가를 받은 동물보호소 및 기타 정부에서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죽이는 것은 금지된다.</p> <p>②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동물을 불가피하게 안락사 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에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동물의 고통을 고려하여 수의사가 적절하게 안락사 하도록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염병에 걸린 것이 확인되어 안락사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심한 부상이나 학대, 질병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145) “현장중심의 도축과정 이론소개 1,2,3, 『월간식육』 2004년 10월.

146) 머리의 앞이마를 도축용 해머로 강타.

147) 머리에 전류를 통하게 하여 그 충격에 의해 기절시키는 방법.

148) 도축용 피스톨을 앞이마에 대고 발사하여 돌출되어 나오는 철침이 뼈를 뚫고서 뇌 조직을 파괴하여 기절시키는 방법.

149) 가축을 CO2 가스실에 밀어 넣어 CO2 가스에 의해 단순수면상태에 바지게 하여 실신시키는 방법.

<p>즉각적인 의식의 상실을 보장하지 않는 약물 투입 및 의식을 상실하기 전의 전기충격은 금지된다.</p> <p>④정부와 동물윤리위원회 및 복지감독관에 의해 인정, 공고, 고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동물의 공공장소에서의 도살,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의 도살은 금지된다.</p>	<p>판단되거나 고통으로 인해 동물에게 안락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p> <p>3. 기타 보호소내의 수용한계를 초과하여 유기동물이 입소되었을 경우에는 시행령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해당될 경우</p> <p>4. 기타 안락사의 대상에 대해서는 농림부령에서 규정한 경우</p> <p>③모든 가축의 도살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혐오감을 주는 방법이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안 된다.</p> <p>④가축은 마취, 전살법, 타격법 등 가축에게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실신시킨 후 무감각상태가 된 이후 도살되어야 하며 가축이 도살되는 동안에도 불필요한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⑤가축이 완전히 죽지 않은 상태에서 도살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p> <p>⑥가축의 실신과 도살은 농림부령에 의한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교육을 받은 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p> <p>⑦농림부는 도살장으로의 수송, 가축의 계류, 도살방법에 대해서 세부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p> <p>⑧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장소 또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의 도살은 금지된다.</p> <p>⑨축산물가공처리법 13조에 의한 검사관 및 자체검사원은 도살과정에서 가축이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는 경우, 검사과정을 중단하고, 허가업소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p> <p>⑩국가 동물보호소나 위탁동물보호소 등은 안락사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p>
--	---

제 3 절 실험동물관련법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한국실험동물학회에서조차 우리나라를 ‘동물실험의 천국’¹⁵⁰⁾ 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동물실험은 그야말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과 관련된 정부 부처는 보건복지부¹⁵⁰⁾ · 과학기술부 · 농림부 · 교육인적자원부 등으로 많은 부처가 관련되어 있으나, 이를 적절히 관리할 법적 장치를 구비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는 AAALAC(Association for Assessment and Accreditation of Laboratory animal Care International) 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과정 중에 2000년부터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¹⁵¹⁾ 행정기관별로 실험동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예규로 정하여 운용하거나, 외국과의 데이터호환을 목적으로 동물실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대학이나 연구소가 있긴 하지만, 동물실험이 이뤄지는 기관들 중 형식적으로나마 동물실험운영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21.6%에 불과하고 실험 지침서를 갖춘 곳도 47.7%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¹⁵²⁾

1. 동물보호법상의 해당조문

현재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동물의 실험을 수행할 때에는 고통을 줄이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는 조항 등 선언적이고 윤리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 동물을 교육·학술연구 기타 과학적 목적으로 실험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제1항), 실험을 행한 자는 그 실험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당해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150) 보건사회부 고시 제88~39호(1988): 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

151) www.kfda.go.kr/korea/webzine/consumer200206

152) http://www.kfda.go.kr/korea/toxi/toxi2_3.htm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제2항). 농림부의 1999년, 2002년 개정안이나 2005년 동물보호법개정취지에서조차도 실험동물과 관련된 조문의 변경은 의욕하고 있지 않다.

2. 2002년의 실험동물법안의 내용

2002년 2월 21일에 김홍신의원의 대표발의로 실험동물의 생산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의 발전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험동물법(안)』이 발의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동물실험을 하는 연구자가 해야 할 노력으로서 3R, 공시동물수의 감소(Reduction), 실험동물의 대체(Replacement), 동물실험의 세련화(Refinement)를 명시하였다.¹⁵³⁾ 주요내용은 첫째, 동물실험은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동물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도록 하며,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동물실험은 실험동물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실험동물의 만성적 고통, 심한 불안 등이 초래되는 경우 및 동물실험이 끝난 후에는 그 실험동물을 안락사 등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안 제6조). 둘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실험시설에는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을 위하여 동물실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안 제7조). 셋째, 동물실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안 제8조, 제26조). 넷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운영·관리 상태가 우수한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생산시설을 각각 우수동물실험시설과 우수생산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지정시설이 관리검사에 불합격할 경우 시설을 폐쇄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0조, 제14조 및 제21조). 다섯째, 실험동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동물을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153) <http://eanimal.snu.ac.kr/aboutus/history/4.htm>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안 제12조 및 제26조). 여섯째, 실험동물생산시설에서 배출된 실험동물의 사체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재해 기준 이하의 물질을 사용한 실험동물의 사체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고, 재해 기준 이상의 물질을 사용한 실험동물의 사체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감염성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안 제19조).¹⁵⁴⁾

이에 대해 서울대 수의대 박재학(朴在鶴·43) 교수는 "실험동물법안은 동물실험운영위원회의 구체적 권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동물복지보다는 오히려 동물실험의 과학화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다.¹⁵⁵⁾ 이는 제16대 국회의 회기가 끝남에 따라 자동폐기되었다.

3. 동물보호단체의 개선안

동물보호법추진위원회에서는 실험동물을 교육, 실험, 연구 및 생물학적 제재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척추동물과 두족류무척추동물로 정의하며,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실험자의 면허, 동물실험윤리위원회설치, 금지되는 동물실험, 실험동물보호규칙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1) 연구자면허 및 정보공개

2002년 동물단체안	2004년 동물보호법추진위원회안
<p>제13조(연구자면허)</p> <p>① 동물실험을 하려는 자는 국가로부터 발급받은 동물실험에 대한 연구자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정부는 연구자면허의 발급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동물실험을 수행하려는 기관은 국가로부터 발급받은 해당 연구에 대한 연구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연구면허에</p>	<p>제15조(연구자, 연구기관, 실험동물사육기관 면허)</p> <p>① 동물실험을 연구자 및 연구기관, 실험동물사육기관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정부의 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p> <p>② 기타 면허의 발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한다.</p>

154) 실험동물법안검토보고서 참조.

155) 동물보호연합 홈페이지.

<p>대한 심사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중앙정부가 면허를 발급한다. 연구면허의 발급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정보공개)</p> <p>① 각 기관은 해당 년도의 동물실험실태에 대한 연간 통계치를 서면 배포용 보고서의 형태로 작성하여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정보공개の内容은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수와 종류, 사육 및 관리조건,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시설의 수와 종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상황, 개별연구의 정당성평가 내용, 실험후의 동물의 처리내용 등을 비롯한 실험동물사용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제19조(정보공개)</p> <p>① 좌 동</p> <p>② 좌 동</p> <p>③ 기타 정보공개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	--

(2) 동물실험의 원칙

<p>2002년 동물단체안/2004년 동물보호법추진위원회안</p>	
<p>제14조(동물실험의 기본원칙)</p> <p>① 동물실험은 인류 및 동물복지의 증진과 동물의 존엄성 및 고통, 실험의 유효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물실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동물실험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감각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p> <p>③ 실험동물에게 건강과 복지에 적합한 최소한도의 행동과 사회적 접촉의 자유, 물과 음식의 적절한 공급과 관리 등 적합한 수용시설과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해당 종이 본래 생활하던 자연환경에 가까운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p> <p>④ 모든 동물들의 일반적인 복지상황은 최소 1일 1회 점검되어야 한다. 실험에 사용되고 있는 동물은 실험으로 인한 고통에 따라 더욱 자주 점검되어야 한다.</p> <p>⑤ 제2항에 의한 동물실험 중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동물실험의 경우에는 진통, 진정, 마취제의 사용 등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적절한 수의학적 기법에 따라 처치하고, 실험이 끝난 후 실험동물의 만성적 고통, 심한 불안 등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 실험동물을 안락사 등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p>	

- ⑥만일 마취제의 사용이 해당 실험동물에게 더 큰 고통을 줄 경우라면, 그 실험 절차는 마취제의 사용없이 실행되거나 실험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
- ⑦해당 실험동물의 재사용은 금지된다.
- * 2004년도안에는 2002년 안의 제1항과 제7항 삭제

(3)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설치

2002년 동물단체안/2004년 동물보호법추진위원회안
<p>제15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2002년안/제18조(2004년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농림부는 서울시와 각 도에 해당 지역의 동물실험을 포함하는 연구의 승인 심사를 위한 기구로서 3개 이상의 기관으로 이루어진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윤리위원회는 연구자와 공공시민 영역을 동등한 비율로 대표하는 1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단, 동물실험기관 연구자와 동물보호단체 추천인이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각 영역의 과반수를 넘을 수 없다. 의장은 법률가로서, 어떠한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윤리위원회는 연구 신청기관이 실험동물의 사용을 포함하지 않는 방법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연구 승인을 거부한다. ④윤리위원회는 해당되는 실험에 대하여 예상되는 동물의 고통과 연구의 이익을 비교하여 예상되는 연구의 이익이 훨씬 큰 경우에만 연구를 승인한다. ⑤위원회는 반년에 한번 동물연구기관에 대해 법률 및 위원회결정의 준수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정부의 동물복지과에 보고한다. ⑥기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4) 금지되는 실험

2002년 동물단체안	2004년 동물보호법추진위원회안
<p>유기동물의 동물실험, 동물을 이용한 흡연실험 등을 금지하고, 기타 실험이 금지되는 종류를 농림부령으로 정함.</p>	<p>동물을 이용한 알콜 및 흡연실험, 유기동물의 실험, 군용견, 경비견, 안내견 등 사역견의 실험, 들쥐 등 야생에서 사로잡은 동물을 이용한 실험, 애완동물시장을 겨냥한 개와 고양이의 형질전환 및 복제실험, 중고등학교 교육용 실험, 시험관 생산이 가능한 항체의 마우스 복수를 이용한 생산을 예시하고, 기타 금지하여야 할 동물실험의 내용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함.</p>

(5)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

2002년 동물단체안
<p>제 2 조 정의</p> <p>“동물실험”이라 함은 실험동물에 대한 모든 실험적 또는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p> <p>“동물실험시설”이라 함은 동물실험 및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공간을 말한다.</p> <p>“실험동물공급자”라 함은 실험동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동물을 생산, 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p> <p>제16조(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p> <p>①농림부장관은 실험동물의 적절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수의사 등 적절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운영 및 관리상태와 동물복지상태에 있어 적정요건을 갖춘 시설을 동물실험시설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기준 등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②농림부장관은 실험동물의 복지를 위하여 수의사 등 충분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운영 및 관리상태와 동물복지상태에 있어 적정요건을 갖춘 시설을 실험동물공급시설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③실험동물을 사용하는 주요사업 또는 용역을 주관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동물실험시설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실험동물공급시설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다.</p>

제 4 절 반려동물관련법제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한 바 없다. 그러나 일반동물과 달리 반려동물수의 증가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들로 인해 1999년과 2002년 농림부 동물보호법개정안에서도 애완동물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각 이해집단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재정경제부는 2003년 8월 1일부터 “15일 이내 폐사 시 100% 교환 및 구입가 환불,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의 책임 하에 질병을 치료해 소비자에게 인도, 치료가 불가능할 때에는 동종으로 교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소비자피해보상규정¹⁵⁶⁾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애견센터에서 모두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¹⁵⁷⁾ 2005년의 개정안에서는 명

156) 재정부 고시 24. 애완견판매업종.

157) 김수진, 애완견의 법적 관리에 관한 문제, 한국법제연구원 2003.

칭을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바꾸어 그 위상을 높였다.

1. 반려동물의 소유자의 의무

(1) 농림부 개정안

1999년 농림부개정안	2002년 농림부개정안
<p>제 2 조(정의) 반려동물이란 개·고양이 등 인간과 감성적, 일상적 유대관계를 나누는 동물 혹은, 이를 위해 사육 번식되는 동물로서, 특히 인간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물을 말하며, 장단기 유기동물과 그 새끼 그리고 안내, 경비 등의 인간과 함께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을 망라한다.</p> <p>제 5 조(동물의 사육·관리) ③관리자는 개, 고양이에 대해서 주소 및 연락처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하며, 인식표가 없이 홀로 배회하는 동물은 유기된 동물로 간주한다.</p> <p>⑤동물을 동반하고 공원 등 공공장소에 출입시에 입마개를 씌우고 끈으로 연결하는 등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하여야 하고,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여야 한다.</p>	<p>제 2 조(정의) 반려동물이라 함은 개와 고양이를 말하며 다른 동물의 경우 인간의 정서함양과 동반의 유대관계를 나누는 동물을 말한다.</p> <p>제 5 조(동물의 사육·관리) ③소유자등은 애완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를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소유자등의 서명, 주소와 연락처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하며, 인식표없이 나돌아 다니는 개·고양이는 유기된 것으로 본다.</p>

2004년 농림부의 동물보호법개정취지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반려동물사육자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반려동물 동반 외출시 인식표와 목줄 부착, 배변봉투 휴대 등 사육자의 관리의무도 구체적으로 동물보호법에 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¹⁵⁸⁾

158) 농림부뉴스, 동물보호 종합대책 요지.

(2) 동물단체개정안

2002년 동물단체안	2004년 동물보호법추진위원회안
<p>제 6 조(책임있는 반려동물보호 및 관리)</p> <p>①농림부 및 해당관청은 반려동물의 종을 제정하며, 우리나라의 기후 및 생태, 사회에 맞지 않는 외래동물의 수입을 금지하며 반려동물이 될 수 없는 동물의 종을 제정한다.</p> <p>②관리자는 동물의 출생, 취득, 이전, 분실, 사망, 처분을 모두 정부 기관이나 정부에서 지정한 민간동물보호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정부기관이나 민간동물보호단체는 해당관리자와 동물에 대한 ID를 부여하도록 한다. 관리자는 주소 및 연락처를 알리는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한다.</p> <p>③인식표가 없이 홀로 배회하는 동물은 유기동물로 간주된다.</p> <p>④해당정부기관 및 민간동물보호단체는 불임수술 및 유기동물 수의 조절 및 유기동물의 수의 확대 방안을 이하여, 동물산업전반에 걸쳐 책임있는 반려동물 취득을 위한 교육에 투자하여야 한다. 반려동물산업의 동물복지 추구 및 유기동물관리를 하는 데 필요한 거래의 도모를 권장한다.</p> <p>⑤등록이 필요한 반려동물이 관리자나 동반자 없이 공공장소를 배회하는 경우, 타인의 재산, 생명, 복지를 위협하는 경우, 이를 목격할 자는 동물보호감독기관이나 보호소에 신고해야 한다.</p> <p>⑥관리자는 타인에게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 감염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p> <p>⑦관리자는 동물을 동반하고 공공장소에 출입시 목줄을 부착하고 인식표를 부착하는 등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미리 조치를 하며,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여야 한다.</p> <p>⑧관리자는 동물보호소 또는 제8조에 의하여 지정된 동물보호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동물을 맡기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물을 유기함이 금지된다.</p> <p>⑨모든 관리자는 수의학적 처반이 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물에게 수의사에 의한 신속한 수의적 처방을 받게 해 줄 의무가 있다.</p>	<p>제 3 조(동물보호 및 관리의 기본원칙) ④관리자 등은 동물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이에 대한 예방접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p> <p>⑤관리자 등은 동물의 출생, 취득, 이전, 분실, 사망, 처분내역 등을 정부기관이나 정부에서 지정한 민간동물보호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정부기관이나 단체는 해당관리자와 동물에 대한 등록증을 부여한다.</p> <p>⑥관리자등은 반려동물에게 소유자와 보호자의 인적사항과 예방접종내역 등을 알리는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고 배회하는 동물은 유기 또는 유실된 것으로 본다.</p> <p>⑧누구든지 반려동물이 관리자나 동반자 없이 공공장소를 돌아 다니는 경우, 이를 동물보호감독관이나 국가가 지정한 보호소나 위탁업체에 신고해야 하며 관리자가 아닌 자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보호해서는 안된다.</p>

2. 반려동물의 판매업

(1) 농림부 개정안

현재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의 판매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지만 현실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낳고 있고, 개정논의과정에서도 많은 반려동물판매업자의 반발이 있었다.

1999년 농림부 개정안	2002년 농림부 개정안
<p>제 6 조(동물의 거래) ①동물을 거래하는 영업소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육 등에 필요한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p>②동물을 매각하는 자는 판매하는 동물에 대하여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검진 및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p>	<p>제 5 조의1(애완동물판매업) ①“영리를 목적으로 애완동물을 판매하는 업(애완동물 번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애완동물 판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애완동물판매업을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③애완동물판매업을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애완동물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p> <p>④애완동물판매업을 하는 자가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에게 예방접종 증명서를 인도하여야 한다.</p> <p>⑤그밖에 애완동물의 관리 및 판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2004년 농림부의 동물보호법개정 의도에 따르면, 반려동물 거래와 관련한 분쟁과 광견병·개회충증 등 동물질병의 인체감염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개·고양이 판매업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일정 연령미만 어린 동물의 판매제한, 동물판매시 구매자에게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의무화 등 판매업자의 책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¹⁵⁹⁾

159) 농림부뉴스, 동물보호 종합대책 요지.

(2) 동물보호단체의 개선안

2002년 동물단체안	2004년 동물보호법추진위원회안
<p>제 7 조(동물의 거래)</p> <p>①상업적으로 동물을 사육, 번식, 거래, 판매하거나 다루는 영업소는 해당 관청에 등록하고 시설기준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기준과 자격을 마련한다. 기준에 미달되거나 학대행위가 적발된 업소의 면허는 취소된다. 다루는 동물, 책임자와 자격요건, 시설, 장소와 시설내역은 목적과 함께 검토대상이 되며 당국은 허가의 거절 및 취소를 행할 수 있다.</p>	<p>제10조(반려동물 번식 및 판매에 관한 규정)</p> <p>①동물을 번식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이 정한 동물에 한해서 번식, 판매 할 수 있으며 동물의 사육에 필요한 공간, 운동시설, 환기, 온도, 청결, 화재나 비상시 동물보호 조치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적정한 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생후 1년 이하 또는 7년 이상의 모견을 번식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p> <p>③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하는 외모의 특징을 위한 교배 및 번식을 금지한다.</p> <p>④동물을 품종개량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물의 복지와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p> <p>⑤번식업자는 모든 산출견과, 판매 및 구매에 대한 기록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열람이 가능하도록 유지하도록 한다.</p> <p>⑥기타 동물번식 및 판매에 관한 허가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규정한다.</p> <p>제11조(동물의 거래)</p> <p>①동물을 구매하는 자와 판매하는 자(이하 ‘거래하는 자’라 한다)는 적절한 식수, 환기, 사료, 공간, 용변, 운동, 휴식, 일광 등 동물 본래의 습성을 배려하여야 하며 동물의 사육 환경시설이나 동물의 도주를 방지하는 시설 등 자치단체가 정한 시설기준 등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동물을 거래하는 자는 동물에 대하여 필요한 예방접종 및 인수공통전염</p>

<p>② 모든 동물은 적절한 식수, 사료, 공간, 용변, 운동, 휴식, 수면, 일광, 환기, 통풍 등을 위생적으로 동물의 본성을 해하지 않는 시설을 갖추고 등록허가를 받은 곳에서 사육·번식·거래된다.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p> <p>③ 동물을 매각하는 자는 판매하는 동물에 대하여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필요한 모든 예방접종 및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검진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농림부는 상업용으로 동물을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입이 금지된 용도와 동물의 내역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p>	<p>병에 대한 검진 및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수의사가 발행한 예방접종서 및 건강증명서를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p> <p>③ 동물을 거래하는 자는 동물의 구매와 판매에 대한 거래기록을 농림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관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동물을 거래하는 자는 거래동물에 대해서 구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동물의 전소유자 또는 거래하는 자 등을 포함한 동물의 신상기록을 제공하여야 하며 소유자와 보호자, 동물보호감독관이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에도 신상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p> <p>⑤ 농림부는 동물을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입이 금지된 용도와 동물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p> <p>⑥ 2개월 이하의 어린 자견을 거래할 수 없다.</p> <p>⑦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부모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동물을 구입할 수 있으며 동물을 거래하는 자는 반드시 동의를 확인한 후 동물을 거래하여야 한다.</p> <p>⑧ 동물을 구입 후 7일 이내에 건강상 이유로 소유자는 환불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물을 판매한 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p> <p>⑨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p>
---	---

3. 유기동물의 처리

또한 질병 감염 등에 따른 사육포기, 분실 등으로 최근 유기동물이 급증¹⁶⁰⁾하여 쓰레기봉투 훼손 등으로 인한 생활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160) 서울시의 보고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각 구청이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주로 개와 고양이)은 1997년에는 1035마리에 불과했으나 2000년 2016마리로, 2000마리를 처음

(1) 동물보호법의 해당조문

현행 동물보호법	1999/2002년 농림부 개정안
<p>제 7 조(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동물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p> <p>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보호조치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이 조에서 “시·군”이라 한다)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p> <p>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시·군에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을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동물애호단체 또는 학술연구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다.</p> <p>⑤시장·군수는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p> <p>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방법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산출 기타 보호조치에 관하여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p>	<p>* 1999년 개정안의 내용</p> <p>③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월을 <u>15일</u>로 축소</p> <p>④학술연구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u>수</u>의학적 방법 등 <u>적정한</u> 방법으로 <u>도</u> 살할 수 <u>있다</u>를 삽입</p> <p>⑤시도지사는 유기된 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동물보호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동물보호 관련단체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신설)</p> <p>* 2002년 개정안의 내용</p> <p>1999년 개정안에서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월을 그대로 두고, ④,⑤의 내용으로 변경. 그 외 “동물보호시설의 운영방법, 시설기준 및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는 조문 추가</p>

그밖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는데, 이 내용은 유기동물에 대한 처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게

둘과한 데 이어 2001년에는 서울에서 주인을 잃고 떠돌다가 잡힌 동물은 모두 3279마리로 전년도보다 61.5% 늘었고, 2002년에는 총 3404마리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되는데, 유기동물들을 포획하여 보호시설에 보호하거나 위탁보호를 하여야 한다.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동물의 종류, 연령, 성별, 특징, 포획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후 1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학술연구단체, 동물보호단체에 기증하거나 분양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¹⁶¹⁾

(2) 동물보호단체의 개선안

2002년 동물단체안	2004년 동물보호법추진위원회안
<p>제10조(유기동물 등에 관한 조치)</p> <p>①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관리자가 더 이상 관리할 수 없는 동물, 학대 현장에서 압수된 동물, 인식표와 동반자 없이 공공장소를 돌아다니는 동물 및 위험에 처한 동물을 발견하였거나 시민으로부터 제보가 접수된 경우 동물보호감독관과 동물보호소를 이용하여 신속히 동물을 구조, 접수, 공고, 보호, 입양, 안락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시장 등은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보호관리를 신속하게 해야 하며 등록사항과 인식표를 확인하여 신속히 관리자등을 파악하도록 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③공고가 있는 날부터 20일이 경과하여도 관리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실물법 제 12조 및 민법 제 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동물보호 감독관 및 동물보호소가 해당동물의 보호관리권을 취득한다.</p>	<p>제 7 조(유기동물 등 대책수립)</p> <p>①농림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로 하여 유기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유기동물보호소와 유실동물보호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농림부장관은 유기동물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책임 있는 반려동물 기르기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p> <p>③유기동물의 확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부 장관은 불임수술 관련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단체에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프로그램의 개발과 시설·장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 8 조(유기동물 등 보호소의 설치 및 운영)</p> <p>①각 시, 도지사는 버려진 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유기동물보호소와 유실동물보호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동물보호관련단체에 운영을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②군, 구별로 동물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임시 유기동물보호소 또는 유실동물보호소를 설치·운영하고 이를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p>

161)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제4조 내지 제7조; 경기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 관한 조례 제3조.

<p>④해당기관에 소유가 이전된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로 인계되거나 농림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일반인에게 입양할 수 있다.</p> <p>⑤시장 등은 그 동물의 관리자 등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p> <p>⑥보호조치의 방법, 절차 및 교육과 지원에 대한 경비 산출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③유기동물보호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운영위원회는 동물보호단체가 추천하는 자가 과반수이상의 인원으로 참여하는 3인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한다.</p> <p>④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제 9 조(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 좌 동(1999년안 제10조)</p>
---	---

제 5 절 요약 및 검토

각국의 동물보호법은 그 나라의 동물들에 대한 보호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제시되는 행위 규범이자 지향점을 제시한다. 따라서 각국은 동물보호법의 제정과 개정과정에 있어, 그 나라의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약자의 보호 등 여러 중요한 주제 하에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해 줄 수 있고 국민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끌어 줄 수 있는 그 국가 자체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동물관련법제는 여러 차례의 개정시도에도 불구하고,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는 권고규정에 그치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법의 구체화된 내용인 농림부의 동물보호법시행규칙은 제정된 바 없고, 이는 실제 동물보호법이 적용된 예가 겨우 3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도 그 실효성이 낮다는 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한다. 그간 발표되어 왔던 농림부의 개정안은 다른 동물관련법들에게 동물보호에 대한 준칙과 수준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 되기보다는 단편적인 몇 조문의 개정에 그쳤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동물관련국제규범이 제시하는 지침과 조화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국내의 기타 동물관련법들과 충실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영역별 보호, 실제적인 동물의 보호대상화, 분류별 보호, 학대 및 태만의 정의 및 명확한 처벌대상화, 복지 감시기관과 학대행위 시정 권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적용의 제한 등에 있어서 동물보호단체의 개정안은 한꺼번에 선진 각국의 동물보호법의 조문들을 그대로 우리의 것으로 하겠다는 의욕이 앞선 것도 사실이라 하겠다.

2005년 개정이 될 동물보호법은 그간의 논의들을 모두 집대성하여 동물보호에 대한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하고, 미래를 향한 우리 행동의 지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은 사회구성원들의 합의에 바탕을 둔 실현가능한 법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개정안은 전면개정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앞에서 제시된 우리 나라의 동물관련법제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그 타당한 정도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1. 동물보호법의 정의규정

현재 우리 동물보호법 제2조는 동물과 관리자의 정의만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동물복지법에서 동물의 개념 및 관리자, 연구시설, 거래상, 전시자, 중간취급자, 운반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실험동물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정의는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동물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지만 본문에서 척추동물과 온혈동물의 언급을 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동물보호법시행령에서 가정동물, 야생동물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동물보호법에서도 동물의 개념으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물보호단체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가축, 실험동물, 반려동물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2. 보호의무의 이원화

현재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의 의무가 제5조에, 누구든지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이 아주 간단하게 제6조에 규정되어 있다. 정의규정이 마련된 후에 동물의 소유자, 관리자 모두가 일반대중에 따라 동물에게 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행위를 열거하는 부분을 두어야 한다. 그것은 동물에게 음식, 물, 거소를 제공할 기보적 필요성과 동물학대방지의 목적을 언급한다. 이러한 조항들은 그 법의

다른 부분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 시민들이 이 부분의 규범을 잘 따른다면 해당 국가의 동물의 삶은 개선될 정도로 충분히 단순하다. 현재 동물보호법 제5조의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은 일반조항으로 그대로 둔다. 그러나 제6조의 학대금지내용은 그 내용이 매우 미미하고, 제11조의 적용배제규정과 함께 해석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므로 전면적인 개정이 요구된다. “합리적인 이유없이”라는 문구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므로,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불필요한 고통”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도록 하고, 학대유형을 목록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동물보호단체의 안은 너무 길고 상세하게 되어 있으므로 대표적인 예를 제시하는 독일의 동물보호법 제3조가 도움이 될 것이다. 혹사, 훈련이나 운동경기 등에 출전하는 동물에게 약물을 사용한 다든지, 고통을 부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병이 든 동물을 경매에 붙이거나 판매하는 경우, 유기하는 경우, 동물에게 심각한 고통, 질환이나 상해를 끼치는 교육이나 조련, 영화촬영, 출연, 광고선전 등, 난폭성을 훈련시키는 행위, 건강상 필요가 없는데도 강제로 사료를 먹이거나, 심각한 고통, 질환 또는 상해를 야기하는 사료를 먹이는 행위, 전기기구를 사용하여 동물의 운동력을 제한하거나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예는 처벌을 받도록 한다.

3. 국가의 역할

이에 대해서는 농림부안에서 제시한 바처럼 기본계획의 수립과 지원 및 동물보호감시관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할 것이며, 동물보호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에는 동물보호단체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그 지원체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는 정부와의 협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4. 농장동물

우리 동물보호법이 농장동물에 대해서는 제11조에서 동물보호법의 제외목록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동물보호법이 동물에 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제11조의 내용은 전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현재 시도되고 있는 HACCP 이나 사육시설인증제가 2007년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동물보호법과의 연계와 축산농가의 지원체제등을 고려하여 상호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정의규정에서 농장동물, 가축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동물보호단체의 요구는 현재 한꺼번에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이는 국민들에게 농장동물의 실태 및 우리의 식생활과의 관계 등도 홍보하면서 그 공감대를 얻어야 할 부분이다.

5. 실험동물

동물실험의 최소한의 일반규정(동물실험을 허가하고 관리하는 기제의 설정, 반복적이고 기대효과 이상의 고통을 부여하는 실험의 금지, 실험금지 사항 및 대상동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등)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내용을 제시한 동물보호단체의 안을 참조하여야 한다. 유기동물의 동물실험금지조항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6. 반려동물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2005년 농림부의 동물보호법개정안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와 표식의무, 반려동물판매자의 의무 및 등록의무, 기록의무 등이 동물보호법에 제정되어야 한다.

제5장 결론

1.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해오고 있고, 이러한 인식변화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법제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살펴본 것이다. 각 국가마다 동물보호의 정도는 다르고, 동물의 기능에 따라서도 동물보호의 정도가 달라졌고, 반려동물에 대해 애정과 자원을 낭비하는 사람들을 용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동물과의 관계의 부분집합에 지나지 않는 반려동물을 대하는 것과 농장동물이나 실험동물에 대한 태도는 매우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물의 고통은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복지를 위해 동물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려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용으로 쓰이기 위해 도살되는 동물이나 실험동물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는다.

2.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 변화, 즉 동물을 감정을 느낄 줄 아는 존재로 파악하면서 세계각국의 동물관련법제는 변화되고 있다. 동물학대에 대해 처벌을 하는 이유도 그 행위로 인하여 인간의 소유권을 침해했다거나 평안함을 해쳤기 때문이 아니라, 동물자체를 중심으로 변화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유럽국가의 경우, 헌법에서 동물을 인간의 동료로서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가 하면, 유럽연합은 동물을 유정물로 인정하고 있으며, 유럽국가의 민법에서는 동물을 인간과 물건사이에 놓이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하였다. 보다 중요한 것은 동물보호의 기본이 되는 동물보호법 내지 동물복지법과 동물의 이용에 따라 분류하여 농장동물, 실험동물, 반려동물의 복지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들도 생기기 시작하였다.

3. 미국과 유럽국가, 특히 독일과 스위스를 비교해볼 때 미국의 동물관련법제는 유럽국가의 동물관련법제보다 동물자체보다는 동물의 이용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차원의 동물복지법이 존재하지만 이는 실험동물의 이용과 애완동물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각 주의 동

물학대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장동물과 관련해서는 연방법인 동물운송관련하여 28시간법이 있고, 인도적 도살법을 두고 있다. 독일이나 스위스의 경우는 고유의 동물보호법을 가지는데, 모든 동물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영향을 받아 유사한 내용들이 상세히 규정되고 있다. 동물 보호에 관해서는 현재 6개의 유럽협정이 존재한다. 애완동물 보호를 위한 유럽협정, 농장동물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정, 국제 운송중 동물보호를 위한 유럽협정, 도살에 있어서 동물보호를 위한 유럽협정, 동물 연구와 동물 자연 서식지에서 야생생물에 관한 협정인데, 독일과 스위스법에 구체화되어 있다.

4. 농장동물의 경우 미국은 연방법이나 주법의 어느 것도 동물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 즉 동물에게 허용되는 기온, 열이나 환기의 규제도, 종 특유의 지켜야 할 내용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은 동물의 먹이로서의 지위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예시하고, 가축의 인도적 처우보다는 농업 로비에 대해 더 지대한 관심이 있음을 나타낸다. 유럽연합의 회원국인 독일과 스위스는 농장동물의 복지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어왔다. 이를 극명하게 나타내주는 예는 운송과 도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유럽연합의 지침이 8시간이상 운송되는 동물을 특별하게 보호하는데에서도 미국과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여행을 이미 동물에게 불편하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 운송수단이 더 편안하도록 규정하는데 반해 미국의 경우 동물 운송에 있어서 스물 몇시간은 불편함이 유지되도록 허용하고 있다. 유럽은 도살에 있어서 최소한의 공포, 스트레스와 고통에 중점을 둔 반면에, 미국의 경우 “홍분이나 불편”의 최소화를 강조한다. 물론, 농장동물의 인도적 도살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동물보호만을 고려에 넣은 것은 아니다. 이는 도살에 참여하는 인간의 감정과 동물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부여하지 않음으로 좋은 품질의 고기를 생산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

5. 실험동물의 복지 또한 고려되어야 하며, 국제적인 실험결과의 공인을 위해서 국제적 기준에 맞는 실험동물관련법제가 존재한다.

6. 우리나라의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선언적이고 윤리적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이미 1999년과 2002년에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동물보호법개정안은 미미하나마, 반려동물의 관리, 국가의 시책수립의무 등을 의욕하였으나 동물학대의 유형정도의 삽입이나 반려동물판매업자의 의무 등 각 이해관계인들간의 의견대립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 때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숭선하여 선진적인 동물보호법의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7. 2005년 농림부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동물학대의 유형과 그 처벌정도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반려동물의 개념을 법에 도입하여 반려동물을 둘러싼 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동물에게 동물권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인간을 위해 동물의 희생이 전제된다할 지라도 인도적인 처우를 할 것이 요구되는 현재의 인식을 법에 구체화시키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8. 2005년 개정예정인 동물보호법에서는 우선 동물보호법이 모든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의규정에서 동물의 정의로 “감각력있는 척추동물”을 지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장동물 혹은 가축, 실험동물 등의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대의 유형이 언급될 필요는 있으나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6조의 구성은 합리적 이유없이 죽이는 경우, 잔인하게 죽이는 경우,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경우와 (제1항) 합리적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으로 세분화 (제2항)하고 있다. 이는 해석상 제11조와 관련하여 먹거리, 사냥의 대상, 모피 및 뿔과 피를 채취하기 위해 동물을 죽이는 경우를 합리적 이유로 봄으로써 이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임을 당한다 할 지라도 동물학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는 동물보호법이 일반원칙과 특별문제를 장 또는 절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제6조가 어느 동물에나 인정된다는 사실을 도

출해내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 동물보호법에서 동물학대금지법 일반론적 성격을 띠게 하려면, 누구든지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하거나 고통을 주는 경우라는 포괄적인 사항을 언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투견이나 투계와 같은 문제를 동물학대의 유형으로 언급하여 그 처벌에 있어 명확성을 기하려면, 개별조항으로 다루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투견이나 투계의 문제와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과의 형평성문제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동물보호연합이 제시한 학대의 유형은 관리자의 의무, 동물의 시술 등의 별개의 조문에서 포섭할 수 있을 것이다.

9. 그 동안 우리가 소홀히 다루었던 가축으로서의 농장동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동물을 죽여 고기를 취하는 것 자체는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금지조항의 예외에 해당하지만, 가축사육시설이나, 도축방법과 관련하여 가축으로서의 농장동물에게도 복지적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 축산법분야에서는 세계화의 기준에 맞춰 HACCP 등 위생관리측면에 신경을 쓰는 초기단계에 놓여있지만, 동물의 복지측면에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법적 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축산법에서 축산업등록제를 실시하면서 가축사육의 적정면적 및 사육시설에 대한 조건을 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지 못하고 있으며, 축산업을 하는 자들은 2002년부터 실시된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경비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윤을 감소시킨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웰빙문화의 추세나 축산물의 수출을 위해서 축산물의 사육규정이 공시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동물에 대한 견해는 가축 등의 이용동물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처우를 해야한다는 사실에 무감각해질 수 있으나, 위생처리의 관점이나 품질향상이라는 면에서는 어쨌든 고려되어야 하는 면이다.

10. 실험동물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이 동물보호법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특히, 실험동물에 관한 내용은 현 동물보호법의 내용이 충분하지 못해 각 단체별로 나름대로의 지침을 만들고 있어 혼선이 빚어지는 바, 이미 2002년에 실험동물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었다. 실험동물에 대한 규제,

실험동물에게도 복지적 측면, 인도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각국의 동물복지법에서 여러 조문에 할애하고 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법으로 다를 수 있겠지만, 동물보호법에서 그 기본이 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1999년도 농림부 개정안/ 2002년 농림부 동물보호법 개정안(농림부공고 제2002-101호)/ 2002년 동물단체안

J.C. 블록(과학세대 옮김), 『인간과 가축의 역사』, 새날 1996.

Lisa Hanks(이상운 옮김), 동물윤리의 정의, CATFANCY 1997. 4., 동물보호연합사이트.

Steve Best(박은정 옮김), 동물복지인가 동물권리인가, 동물보호연합사이트.

가축도 ‘웰빙’ 필요할까... ‘가축복지 과학’ 떠올라, 동아일보, 2004. 3. 2., <http://www.donga.com/fbin/news?f=print&n=200403020238>

구제역방역대책, 법 따로! 현실 따로! 법을 무시한 무리한 방역대책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2003. 7.

김수진, 애완동물관리에 관한 법적 문제, 한국법제연구원 2003.

김순희, 2002.9 입법예고 농림부 동물보호법의 문제점들 <http://www.kaap.or.kr> 게시판 10번.

니겔 로스펠스(이한중 옮김), 동물원의 탄생, 2003.

데즈먼드 모리스(김석희 옮김), 인간동물원, 물병자리, 2003.

동보연, 동물보호법에 대한 1차 의견, <http://www.kaap.or.kr>

박원순, ‘동물권’의 전개와 한국인의 동물인식, 형평과 정의 9집(1994. 11), 324~353면.

박전홍, 수의학의 역사, 마야, 2002.

비투스 B. 드뢰셔(이영희 옮김), 휴머니즘의 동물학, 이마고, 2003.

참 고 문 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02년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보고서, 2001. 1.

신남식, “인간과 동물의 상호관계”, 03 1st HAB(Human Animal Bond) 국제 심포지움(2003. 11. 2) 자료집.

월간식육, 현장중심의 도축과정 이론소개1·2, 2004, 10월호, <http://www.meetline.co.kr>

임채형, 동물실험과 동물애호, <http://www.kfda.go.kr/korea/webzine/consumer200206/>

제임스 서펠(윤영애 옮김), 동물, 인간의 동반자, 들녘, 2003.

최윤철(역), 『독일동물보호법』, 『해외법률소개』, 2004. 11.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론, 고대 학술지 철학연구 제22집(1999. 6).

피터 싱어/김성한 옮김, 『동물해방』, 인간사랑, 1999.

헬무트 브라케르트, 코라판클레 펜스(최상안, 김정희 역), 『시와 그림을 통해서 본 개와 인간의 문화사』, 백의 2002.

<http://www.kaap.or.kr> (한국동물보호연합)

<http://www.kaha.or.kr> (한국동물병원협회)

<http://koreaanimals.or.kr> (동물보호협회)

<http://animals.or.kr> (동물자유연대)

2. 외국문헌

(1) 각 국의 동물보호 및 복지법

United States Animal Welfare Act(7 USC 2131).

Health Research Extension Act of 1985(<http://grants.nih.gov/grants/olaw/references/phspol.htm>).

Swiss Federal Act on Animal Protection of March 9, 1978.

Swiss Animal Protection Ordinance in May 27, 1981.

Tierschutzgesetz in Deutschland

Vollzugsprobleme im Tierschutz, Bericht des Bundesrates an die Geschäftsprüfungskommission des Ständerates vom 8. September 1999(<http://www.bvet/admin.ch/info-service/d/gesetzgebung>).

Unser Tierschutzgesetz, http://www.bvet.ch/tierschutz/d/gesetzgebung/unser_tschg/Tschg-kommentiert

(2) 문 헌

Almuth Hirt/ Christoph Maisack/ Johanna Mritz, Tierschutzgesetz, Verlag Franz Vahlen München, 2003.

Cass R. Sunstein/ Martha C. Nussbaum, Animal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Favre, David and Hall, Charles F. IV, Comparative National Animal Welfare Laws, Michigan State University College of Law-Animal Legal & Historical Center 2004.

Grech, Kali S., Detailed Discussion of the Laws Affecting Zoos, Michigan State University College of Law, Animal Legal & Historical Center 2004 (<http://animallaw.info/articles/dduszoos.htm>).

Hans-Georg Kluge (Hrsg.), Tierschutzgesetz, Kohlhammer 2002.

Holger Herbrüggen, Österreichisches Tierschutzrecht im Lichte der europäischen Intergration, Braumüller 2001.

참 고 문 헌

- Marc Bekoff with Darron A. Meaney(Edited), Encyclopedia of Animal Rights and Animal Welfare, Greenwood Press, 1998.
- Marna Owen, Animal Rights, yes or no?, lerner publications company, 1995.
- Mosel, amy, What About Wilbur? Proposing a Federal Statute to Provide Minimum Humane Living conditions for Farm Animals Raised for Food Production, fall, 2001, University of Dayton School of Law Review(www.animallaw.info/articles/arus27udtnlr133.htm).
- Murswiek, D(in: M. Sachs(Hrsg,)), Art. 20a zu GG Kommentar 3. Aufl.
- Rowan, Andrew N., Farm Animal Welfare, Tufts University 1999.
- Stiftung für das Tier im Recht, 『Tier, keine Sache - Dokumentation den Nationalrat』, Zürich, den 1. August 2002.
- Tierschutzbericht 2003 - Bericht über den Stand der Entwicklung des Tierschutzes,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5/723(26.03.2003).
- Tom Regan, The Case for Animal Right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 Tomaselli, Paige M., International Comparative Animal Cruelty Laws, Michigan State University Detroit College of Law 2003; http://www.animallaw.info/articles/art_details/print.htm.